

연구보고 2013-01

어린이집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유해미 이정원 이세원

머 리 말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2012년 영아 무상보육 실시와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그리고 2013년 만 3, 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등으로 어린이집의 이용은 향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 위주의 인프라 공급 구조로 인하여 지역간 보육 수요와 인프라 공급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기관간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여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등 선호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 수요가 높은 대상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를 명시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1순위 입소 대상자는 9개 항목으로, 맞벌이 가구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이 정작 우선적으로 입소하지 못하거나 보육 수요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현행 1, 2순위 대상에서 간과되는 등 보육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보호와 육아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외국의 보육시설 입소 기준을 검토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 필요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 보육 수요를 정교화 하여 보육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입소순위 조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부모들의 욕구에 보다 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준 부모님들과 유익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3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분석틀	12
3. 연구 방법	13
II. 연구의 배경	19
1. 보육의 우선 제공 관련 규정	19
2. 선행연구 검토	21
3. 외국 사례 및 시사점	27
III. 보육 수요 관련 법률 및 제도	55
1. 사회적 보호 대상	55
2. 육아지원 우선 적용 대상	66
3. 소결	77
IV. 가구 특성별 보육 수요	79
1.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79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과 수요	85
3. 소결	98
V.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100
1. 가구 특성별 대기 현황	100
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109
3.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차등 적용 필요도	112
4. 소결	115
VI.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내실화 방안	117
1. 요약 및 종합	117
2.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119
참고문헌	129

부 록	131
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의견조사 설문지(부모용)	133

표 차례

〈표 I-3-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
〈표 I-3- 2〉	응답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징	15
〈표 I-3- 3〉	가구 특성별 응답 가구의 해당 비율	16
〈표 I-3- 4〉	설문조사 내용	17
〈표 II-1- 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9
〈표 II-2- 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21
〈표 II-2- 2〉	입소 대기 신청 기관	22
〈표 II-2- 3〉	입소 대기 영유아 현황 및 분류	24
〈표 II-2- 4〉	어린이집 입소 대기 사유	24
〈표 II-2- 5〉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25
〈표 II-3- 1〉	동경도 시나가와 구의 보육소 입소 기본 지수	29
〈표 II-3- 2〉	동경도 시나가와 구의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	31
〈표 II-3- 3〉	동경도 세타가야 구 보육소 입소 기준 점수	32
〈표 II-3- 4〉	동경도 세타가야 구의 보육소 입소 조정 점수	34
〈표 II-3- 5〉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동일 지수 세대의 보육소 입소순위 적용 단계	36
〈표 II-3- 6〉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적용 기본 방침	37
〈표 II-3- 7〉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선정 기준	37
〈표 II-3- 8〉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타 세대 적용 지표-등급 상 향 적용 지표	39
〈표 II-3- 9〉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보육 대체 수단	39
〈표 II-3-10〉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 조정 지수-세대 상황	40
〈표 II-3-11〉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의 입소 조정 지수-근로 상황	41
〈표 II-3-12〉	요코야마 시의 조정 지수-한부모 가족 등	42
〈표 II-3-13〉	요코야마 시의 조정 지수-형제 상황(어느 쪽이든 하나)	42
〈표 II-3-14〉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동일 등급, 동일 조정 지수인 경우 의 우선순위 적용	42
〈표 II-3-15〉	센다이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준 지수	44

〈표 II-3-16〉	센다이 시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	46
〈표 II-3-17〉	후쿠오카 시의 보육소 입소 분류 기준표(보호자 상황)	47
〈표 II-3-18〉	미하마 정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준	49
〈표 II-3-19〉	프랑스 지자체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 고려사항	51
〈표 II-3-20〉	일본의 보육소 입소 순위 적용 기준 지역간 비교	52
〈표 III-1-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원 대상	55
〈표 III-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 대상	57
〈표 III-1- 3〉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	58
〈표 III-1-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60
〈표 III-1- 5〉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62
〈표 III-1- 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 ..	62
〈표 III-1-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 ..	63
〈표 III-1- 8〉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	64
〈표 III-1- 9〉	「입양특례법」상 지원 대상	66
〈표 III-2- 1〉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67
〈표 III-2-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지원 대상	68
〈표 III-2- 3〉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2013)	69
〈표 III-2- 4〉	장애아동수당 지원 현황(2013)	70
〈표 III-2- 5〉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2013) ..	71
〈표 III-2- 6〉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월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013)	71
〈표 III-2- 7〉	중앙정부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3)	72
〈표 III-2- 8〉	지방자치단체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0)	73
〈표 IV-1- 1〉	취업모 가정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80
〈표 IV-1- 2〉	전체 어린이집의 영아, 유아 및 영유아 대비 취업모 자녀 비율 ..	81
〈표 IV-1- 3〉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82
〈표 IV-1- 4〉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84
〈표 IV-2- 1〉	영유아 자녀 가구의 맞벌이 및 모 취업 비율	85
〈표 IV-2- 2〉	지난 1주간 활동 내용	86
〈표 IV-2- 3〉	영유아 취업부의 근로 형태별 영유아 취업모 근로 형태	86
〈표 IV-2- 4〉	주된 직장(일)의 취업 형태	87

〈표 IV-2- 5〉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전일제 여부	88
〈표 IV-2- 6〉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88
〈표 IV-2- 7〉 주당 근로 시간(평소)	89
〈표 IV-2- 8〉 주당 총 근로 시간(지난 1주일 기준)	89
〈표 IV-2- 9〉 주당 주업 시간(지난 1주일 기준)	90
〈표 IV-2-10〉 주당 부업 시간(지난 1주일 기준)	91
〈표 IV-2-11〉 모의 근로 형태별 주당 근로 시간	91
〈표 IV-2-12〉 영아 맞벌이 가구의 주당 근로 일수	92
〈표 IV-2-13〉 근로계약 기간	92
〈표 IV-2-14〉 현재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지난 1주일 기준)	93
〈표 IV-2-15〉 주된 근로 장소(지난 주 기준)	94
〈표 IV-2-16〉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근로 장소	94
〈표 IV-2-17〉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훈련 분야 및 시간	96
〈표 IV-2-18〉 훈련비 지원 현황(2013)	97
〈표 V-1- 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 - 지역 규모별	100
〈표 V-1- 2〉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 - 가구 특성별	101
〈표 V-1-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지역 규모별	102
〈표 V-1- 4〉 어린이집 이용 자녀 연령 - 가구 특성별	102
〈표 V-1- 5〉 이용 중인 기관 유형	103
〈표 V-1- 6〉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여부/대기 기간	104
〈표 V-1- 7〉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총 기관 수	104
〈표 V-1- 8〉 지역 규모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 유형(중복응답)	105
〈표 V-1- 9〉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 수	106
〈표 V-1-10〉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여부	107
〈표 V-1-11〉 현재 이용 어린이집 총 대기 기간 - 가구 특성별	108
〈표 V-1-12〉 가구 특성별 입소 대기 신청 총 어린이집 수	109
〈표 V-2- 1〉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인식	109
〈표 V-2- 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필요도-평균 점수 분포 ..	110
〈표 V-2- 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지역 규모별	111
〈표 V-3- 1〉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차등 적용 기준 동의 비율 ..	112
〈표 V-3- 2〉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 차등 적용-주당 근로 시간	

기준	113
〈표 V-3- 3〉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 차등 적용-주당 근로 일수 기준	113
〈표 V-3- 4〉 맞벌이 가구 대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대상	114
〈표 V-3- 5〉 맞벌이 가구 대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동의/비동의 비율	115
〈표 VI-1- 1〉 공통 적용 대상-가정내 보육/대기 기간/입소 필요도	118
〈표 VI-2- 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세부 조정 방안 - 1안	123
〈표 VI-2- 2〉 어린이집 입소 순위 기타 조정 기준	127

그림 차례

〔그림 I-2-1〕 연구 흐름도	12
〔그림 VI-2-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세부 조정 방안 - 2안	124
〔그림 VI-2-2〕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 대도시 지역	128
〔그림 VI-2-3〕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 읍·면 지역	128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013년 영아 무상보육 실시와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등으로 기관보육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어린이집 대기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 ☐ 기관보육 수요 증대에 따라 실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 등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현행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단지 1, 2순위로 구분되어 있고, 1순위 대상은 9개 항목으로 많아 보육 수요의 면밀한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질환이 있는 부모나 가족 돌봄 중인 부모 등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서 간과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방식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가 우려됨.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조정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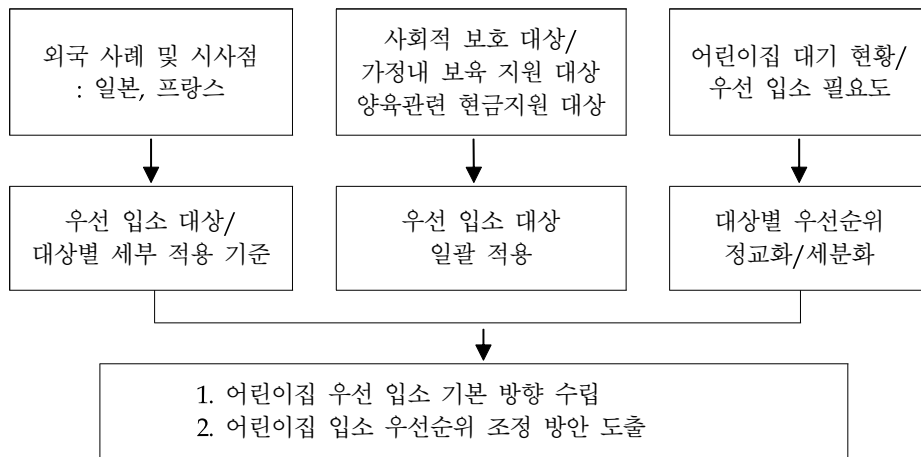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대기 아동 현황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등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현행 입소 우선순위 내실화의 필요성을 도출함.
 - 현행 사회적 보호 가구 및 아동에 대한 법률 규정, 가정내 보육 지원 대상, 그리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조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적용을 모색함.
 - 외국의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함.
 - 대상별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과, 우선 입소 필요도를 규명하여 현행 입소

우선순위를 정교화하고, 추가 입소 우선 대상을 규명함.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보육 수요에 따라 대상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추가 고려 대상을 제시함.

□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원자료 재분석,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부처 담당자 대상 간담회와 자문회의 등임.

- 설문조사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유아를 둔 부모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2. 연구의 배경

가. 보육의 우선 제공 관련 규정

□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에 의거하여 1순위와 2순위자로 규정됨.

- 1순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자녀,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명 이상인 가구임.

- 2순위자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과 입양된 영유아임.

나. 선행연구 검토

- 가구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이고, 평균 대기 기간은 6.4개월이며, 대기 신청 기관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3.7%로 가장 높음.
- 어린이집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는 기관은 64.2%이며, 해당 비율은 대도시 지역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가장 높음.

다. 외국 사례 및 시사점

- 일본 사례
 - 보육소 입소 우선 아동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7조의 1)에 1) 항시 주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3) 질병 중이거나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동거 중인 가족을 상시 간병 중인 경우 5) 지진, 풍수해, 화재 그 외 재해 복구 중인 경우 6) 이외 사항 등으로 명시함.
 - 지역적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대도시 지역인 동경도 시나가와 구, 세타가와 구 그리고 요코하마 시, 중소도시 지역인 센다이 시와 후쿠오카 시, 읍·면 지역인 미하마 정의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적용 사례를 각각 살펴봄.
- 프랑스 사례
 - 보육시설 우선 입소 요건으로는 부모의 근로 상황과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부모나 장애 아동 등 취약 가족이 고려되며, 이외에도 구직 중인 부모, 학생 부부, 다자녀 가구가 포괄됨.
- 시사점
 - 양국에서 보육 수요가 높다고 공통적으로 판정되는 대상은 1) 맞벌이 가구 2) 장애 부모 3) 저소득/취업 한부모임.
 - 일본의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적용 체계는 대기 아동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상별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본 점수와 조정 지수를 마련하는 등 정교한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적용 기준이 단순하고 유연함.

3. 보육 수요 관련 법률 및 제도

가. 사회적 보호 대상

☐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제공은 부모의 출산, 양육, 장애, 질병 빈곤에 처한 가구가 일차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가구 또는 부모(또는 보호자)와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나 질병,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노숙인,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과 입양 아동, 장애 아동임.

☐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의 법적 근거

-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 부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다문화가족 등임.
-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은 1)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입양특례법」상 입양된 영유아 등임.

나. 육아지원 우선 적용 대상

☐ 가정내 보육 지원 제도로써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경기도의 가정보육사 제도를 살펴봄.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은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임.
- 가정보육사 제도의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두 자녀 이상 가구 등임.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육수당과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시금인 출산장려금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분됨.

- 중앙정부에서는 농어업인가구 자녀, 장애 아동, 한부모가족 자녀, 입양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둘째 또는 셋째아부터 출산

장려금과 월 아동수당을 지급함.

4. 가구 특성별 보육 수요

가.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 어린이집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취약계층 가구, 다문화가족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약 93.7%이나, 해당 아동 비율은 50% 수준임.
 - 취약계층 가구(저소득층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인 영유아)의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약 26.5%이며, 해당 비율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1명 이상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의 약 53.3%이며, 해당 비율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남.

나.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과 보육 수요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37%를 차지하며, 모의 취업률(휴직자 포함)은 39.5%임.
 -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는 부(父)에 비해 모(母)가 불규칙적 출근과 시간제 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모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유아에 비해 낮음.
 -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근로 일수는 3일 이하 4%, 4일 1.7%이며, 자택 근로 비율은 6.4%임.
- 2012년과 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바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주당 근로 시간(평균)은 40시간 미만 비율이 약 8%이고, 해당비율은 여성 약 16%로 남성에 비해 높음.
-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로 형태 등을 반영하여 현행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시 취업 기준인 주당 40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을 하향

조정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함.

- 직업훈련 중인 부모의 경우는 정부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훈련과정 중 주당 40시간, 총 20일 이상에 한하여 출석 기준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5.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영유아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가구 특성별 대기 현황

- 각 대상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된 영유아는 전체 해당 대상 중 85.7%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7.1%, 차상위계층 자녀 71.4% 순으로 나타나며, 맞벌이 가구 자녀는 이들보다 낮은 68.2%임.
- 어린이집 대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의 65.4%가 대기 경험이 있고, 해당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대기 기간은 5.1개월이며 대도시 지역이 6.2개월로 가장 길고, 평균 대기 신청 기관수는 3.6개소이고 대도시 지역이 4.1개소로 가장 많음.
 - 대기 기관 유형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비율이 68.3%로 가장 높고, 해당 비율은 대도시 지역에서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 특성별로는 입양된 영유아를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의 대기 신청 비율이 7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 부모 자녀 68.8%, 질환 있는 부모 자녀 66.7% 순임.
 - 평균 대기 기간은 질환이 있는 부모가 9.8개월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인 영유아 6.2개월, 3자녀 이상 가구 6.0개월 순이며, 맞벌이 가구는 5.6개월임.
 - 평균 대기 기관수는 가족 돌봄 중인 부모 자녀가 총 4.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가 총 4.1개소로 높게 나타남.

나.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부여 시에 각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 부모 자녀가 4.5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질환 있는 부모 자녀 4.39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4.37점,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4.19점, 기초생활수급자 4.08점,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4.05점 순으로 나타나며, 맞벌이 가구는 이들보다 낮은 4.03점으로 조손가족 영유아와 동일한 수준임.
 - 평균 점수가 3.5점 이하로 낮은 대상은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3.44점), 다문화가족 영유아(3.42점), 입양된 영유아(3.10점)임.
- ☐ 각 대상별 어린이집 입소 우선 필요도 인식은 지역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다문화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는 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차등 적용 필요도

- ☐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에 차등 적용에 동의한 비율은 근로 시간 73.4%, 근로 일수 69.2%, 근로 형태 66.9% 순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 52.9%로 가장 많고, 15시간 미만 4.8%, 30시간 미만 16.2%, 40시간 미만 26.2%임.
 - 주당 근로 일수는 5일 이하가 82.9%로 가장 높고, 2일 이하 2.2%, 3일 이하 7.1%, 4일 이하 7.8%임.
- ☐ 맞벌이 가구보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장애 부모 자녀 89.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86.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83.2% 순임.
 - 맞벌이 가구가 자신들보다 우선 입소하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장애 부모 84.0%, 질환 있는 부모 자녀 79.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5% 순으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6.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내실화 방안

가. 기본 방향

- ☐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 적용의 기본 방향은 보육정책의 목표 즉 1)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의 완화와 2) 아동의 성장 및 발달 지원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원리는 다음과 같음.
-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은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렵거나 열악한 양육 환경에 처한 아동임.
 -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정교화하고 추가 보육 수요층에게는 조정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면밀한 적용을 위해 대상별 세부 기준을 마련함.
 -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어린이집 입소 순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 세부 방안

- ☐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 조정 1안은 모든 맞벌이 가구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A)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 B) 차상위계층 자녀, 영유아 2자녀 가구, 조손가족 영유아, C)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족 영유아 순으로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임.

입소순위	대상자		
1순위	- 맞벌이 가구 자녀	조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A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조손가족 영유아	B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C
	- 장애 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순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순위	- 조손가족 영유아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 기타 한부모 가족 자녀, 입양된 영유아		

- 조정 2안은 맞벌이 가구 등 보육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1순위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조정된 1순위 대상은 맞벌이 가구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임.

	현행	조정 방안
1순위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영유아 - 입양된 영유아	- 조손가족 영유아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3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자녀 - 입양된 영유아

□ 기타 조정 방안

- 맞벌이 가구의 우선순위 적용은 주당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근로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질환 있는 부모는 장애 부모에 준하는 보육 수요층으로 평가되므로 조정된 2순위 대상자에 추가하고, 가족 돌봄 중인 부모는 조정된 3순위 대상자에 추가함.
- 기타 조정 기준으로 추가 점수가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려는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다니는 경우 등이며, 감점 적용이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신청 아동 이외의 자녀로 인해 출산휴가 중으로 출

산휴가 종료 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등임.

□ 지역 여건별 적용 방안

-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대기 문제가 심각하므로 조정된 1순위자 중 상대적으로 보육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맞벌이 가구와 장애 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외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그 다음 순위를 부여하여 차등 적용함.
- 읍·면 지역의 경우는 도시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의 해당 비율이 높고,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 영유아의 우선 입소 필요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이들의 입소 순위를 상향하여 적용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2013년 만 3, 4세 누리과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집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가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영아(0~만 2세)에서 2013년부터 전 계층 만 5세아로 전면 확대하였다.

그러나 만 3세부터는 가정내 양육에 비해 기관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둔 부모들의 기관보육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증가하는 기관보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부모들이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어린이집 우선 입소 규정은 199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래 2005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걸쳐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단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1순위 대상자는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여 9개 항목으로 많아 이들 간의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환이 있는 부모 등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나 현행 1, 2순위에서 간과되어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맞벌이 가구의 적용 기준은 전일제 근로 즉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로 규정되어 시간제 근로 등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특히 맞벌이 가구 등 보육 수요가 명백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실제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며, 현행 입소 우선순위에서 간과된 보육 수요층을 새롭게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적용 대상, 가정내 보육 지원 대상, 그리고 외국의 보육시설 입소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정교화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틀

첫째, 어린이집 대기 현황과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입소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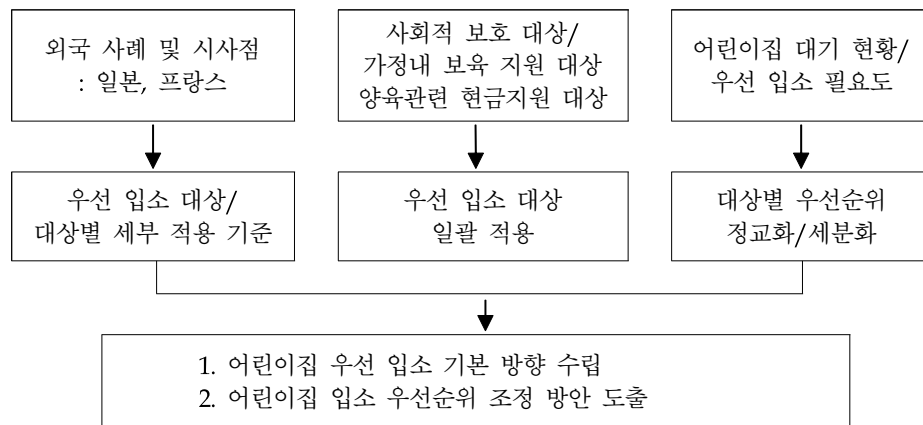
둘째, 일본과 프랑스의 보육시설 입소 자격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특히 대기 아동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는 지역 규모별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다.

셋째, 사회적 보호 가구 및 아동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과 기관보육 이외의 육아지원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추론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논리를 견지한다.

넷째,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대기 현황과 우선 입소 필요도를 규명하여 각 대상별 보육 수요를 정교화하고, 명백한 보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서 간과된 대상을 새롭게 제시한다.

다섯째, 앞서 다룬 외국 사례, 관련 법률 및 제도, 그리고 가구 특성별 보육 수요와 우선 입소 필요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대상별 우선순위 및 세부 적용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 [그림 1-2-1]과 같다.



[그림 1-2-1] 연구 흐름도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어린이집 대기 아동 현황과 입소순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입소 우선 순위 조정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보육 수요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정교화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 대상을 규정한 현행 법률과, 기관보육 이외의 육아지원 대상 및 수준을 조사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적 보호 대상 관련 법률 내용, 현행 가정내 보육 지원 제도 및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경기도 가정보육사제도의 지원 대상,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현황을 파악한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 대상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원자료 재분석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의 근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1~3월 기준) 및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를 재분석하였다. 동 자료는 자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분석 대상 범위는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대상 부모의 약 90%가 속하는 연령대인 만 30~44세에 한정하고, 해당 연령자 중 미혼자는 제외한 후 이들의 근로 형태와 근로 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항목은 성별 1) 주당 근로 시간(주업/부업/전체) 2) 고용 계약 기간¹⁾ 3) 직장내 직위(임금/비임금근로자²⁾ 4) 임금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 반복 갱신 여부 5) 주된 직장의 전일제(주당 근무 시간)/시간제 여부 6) 근로 기간 미 지정인 경우 일시직 여부³⁾ 7)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다.

1) 1개월 미만,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1년 초과 등

2)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임.

3) 지난 주 일자리 기준,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 여부(예: 건설임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다. 설문조사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규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조사 지역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 지역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아 대기 아동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규모별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 구로구(대도시 지역), 경기도 구리시(중소도시 지역), 경기도 가평군(읍·면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각 지역별 영유아수 대비 비례 할당 방식으로 배분된 사례수에 따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영유아를 둔 부모 총 1,000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I-3-1>과 같다.

〈표 I-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거주지역		총 자녀수	
서울 구로구	65.5	1명	38.8
경기도 구리시	27.8	2명	48.6
경기도 가평군	6.7	3명 이상	12.6
성별		평균(명)	1.8
남성	28.7	어린이집 이용여부	
여성	71.3	이용 중	55.1
연령		이용 안함	44.9
20대	5.4	월 가구소득	
30~34세	33.1	200 만원 이하	17.8
35~39세	46.4	201~300 만원	22.9
40대 이상	15.1	401~500 만원	19.4
평균(세)	35.8	500만원 초과	15.6
		무응답	2.2
		평균(만원)	404.1
계			100.0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구로구 65.5%, 경기도 구리시 27.8%, 경기도 가평군 6.7%이다. 다음으로 연령은 35~39세가 46.4%, 30~34세가 33.1%로 30대 부모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응답 가구의 자녀수는 평균 1.8명이고, 이들 중 최소 연령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비율은 55.1%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300만원대가 22.9%, 301~400만원대가 1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은 약 404만원이다(표 I-3-1 참조).

맞벌이 가구⁴⁾의 주당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표 I-3-2>와 같다.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아버지는 46.2시간, 어머니는 42.8시간으로 아버지가 약간 길게 나타나며,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비율은 각각 51.6%와 7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 일수는 아버지가 5.2일, 어머니가 5.1일로 나타났고, 주5일 근무하는 비율은 81.3%와 8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 형태는 아버지의 경우 전원이 출퇴근 근무자였고, 어머니는 1.4%만이 재택 근무를 하여 부모 모두 출퇴근 근무자가 주를 이룬다.

<표 I-3-2> 응답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징

		단위:%(명)	
구분		부	모
근로 시간	40시간	51.6	70.7
	41~50시간	31.3	23.1
	51~60시간	12.5	5.4
	61시간	4.6	0.8
	평균(시간)	46.2	42.8
근로 일수	5일	81.3	89.9
	6일	16.8	9.8
	7일	1.9	0.3
	평균(일)	5.2	5.1
근로 형태	출퇴근 근무	100.0	98.6
	재택 근무	0.0	1.4
계(수)		100(368)	100(368)

한편 현재 입소 우선순위 1순위나 2순위에 해당하는 대상과 우선 입소 추가

4) 현행 규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취업의 정의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로에 한함.

고려 대상의 응답 가구 해당 여부를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표 I-3-3>과 같다.

우선 현행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체 응답 가구 중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지역의 해당 비율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5.0%, 3자녀 이상 자녀 가구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읍·면 지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1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밖의 우선 입소 대상들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2.5%, 차상위계층 자녀 5.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는 3.5%가 해당되며, 읍·면 지역의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9.0%와 10.4%, 7.5%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부모 자녀 3.2%, 입양된 영유아 비율은 0.7%, 조손가족 영유아는 1.9%,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는 2.1%로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응답 가구 중 약 5.0%가 해당하나 지역적 편차가 커서 읍·면 지역의 해당 비율은 11.9%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3.6%로 낮았다.

다음으로 현행 규정상 1~2순위 입소 대상은 아니나, 보육 제공의 우선 대상으로 새롭게 고려할 대상들의 해당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는 전체 응답자의 9.7%가 해당되고, 직업훈련/학업 중인 부모 자녀는 3.8%,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는 1.7%, 질환 있는 부모 자녀는 1.2%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가구의 해당 비율은 특히 다자녀 가구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린 이집 입소에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새롭게 포괄하는 데는 면밀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3-3〉 가구 특성별 응답 가구의 해당 비율

단위:%(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2.6	0.7	9.0	2.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8	1.8	7.5	3.5
차상위계층 자녀	5.8	4.0	10.4	5.6
장애 부모 자녀	3.1	3.2	4.5	3.2
질환 있는 부모 자녀	1.4	0.7	1.5	1.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1	1.8	3.0	2.1
맞벌이 가구 자녀	39.4	32.4	29.9	36.8
다문화가족 영유아	4.9	3.6	11.9	5.0

(표 I-3-3 계속)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전체
3자녀 이상 가구	10.5	12.2	17.9	11.5
조손가족 영유아	2.3	1.4	0.0	1.9
입양된 영유아	0.9	0.4	0.0	0.7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5.7	33.1	35.8	35.0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4.0	3.6	3.0	3.8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9.8	10.8	4.5	9.7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2.1	0.7	1.5	1.7
수	(655)	(278)	(67)	(1,000)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1) 현재 기관 이용 여부와 대기 경험 2) 대상별 우선 입소 적용(추가 고려 대상 포함) 필요도 3) 맞벌이 가구 대비 우선 입소 적용(추가 고려 대상 포함) 필요도 4) 맞벌이 가구 대상 입소 우선순위 차등 적용의 필요성 여부 및 적용 기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3-4>와 같다.

〈표 I-3-4〉 설문조사 내용

조사 영역	질문 내용
응답자 일반적 특징	- 거주지역, 성별, 연령, 월가구소득 - 입소 우선순위 고려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 맞벌이 가구의 주당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주당 근로 일수 - 총 자녀수
기관 이용 /대기 현황	-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 이용 시 자녀 연령, 기관 유형 - 어린이집 대기 신청 경험 여부, 대기 시간, 대기 신청 기관수와 유형
대상별 입소 우선 필요성 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이하 맞벌이 가구 자녀) - 다문화가족 영유아 - 3자녀 이상 가구 - 조손가족 영유아 - 입양된 영유아 - 질환 있는 부모(장기간 입원, 통원 치료 등) 자녀

(표 I-3-4 계속)

조사 영역	질문 내용
대상별 입소 우선 필요성 정도	- 임신/출산한 부모 자녀(출산 전후 6개월) - 가족 돌봄 중(장애 가족, 치매노인 돌봄 등) 부모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맞벌이 가구 대비 우선 입소 필요성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차상위계층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다문화가족 영유아 - 3자녀 이상 가구 - 조손가족 영유아 - 입양된 영유아 - 질환 있는 부모(장기간 입원, 통원 치료 등)의 자녀 - 임신/출산한 부모의 자녀(출산전후 6개월) - 가족 돌봄 중(장애 가족, 치매노인 돌봄 등) 부모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맞벌이 가구 우선 입소 적용 기준 세분화 필요성 여부/ 적용 기준	- 근로 시간, 근로 형태, 근로 일수별 차별 적용 동의 여부 - 근로 시간 차별적 적용 시 기준: 주 15시간 미만, 30시간 미만,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 근로 일수 차별적 적용 시 기준: 주 2일, 3일, 4일, 5일 이하

라.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와 담당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과 우선순위 조정 및 세부 적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 관련 제도 규정 즉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관련 규정 및 개정 과정을 다루고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관련 외국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1. 보육의 우선 제공 관련 규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에 의거한다. 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원장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표 II-1-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 |
|---|
| <p>☐ 1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p>☐ 2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 75~76.

해당 규정은 그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199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6)으로 보육시설 입소 순위 대상 중 저소득층 가구 자녀 다음으로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신설되었다. 또한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12.29)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추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와 '일정 장애등급 이상 부모의 자녀'가 포함되었고, 201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6.7)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추가되었다. 연이어 2012년에는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표 II-1-1>과 같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은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로서, 이 때 취업의 정의는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이며,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3a: 75).

한편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a: 76). 단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는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형제·자매, 대기 기간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 등 보육 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2013년 4월 1일부터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순위 일 경우는 다자녀 가구 자녀가 우선 입소토록 한다.

또한 동일 입소 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3a: 76). 구체적으로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하고, 단 2순위 항목만 있을 경우는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또한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반드시 준수하여 적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a: 77).

2. 선행연구 검토

어린이집 대기 아동 현황과, 우선 입소 순위 적용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기 현황과 우선순위 적용 일반

1) 가구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가구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입소 중 기관 입소 전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나타난다. 해당 비율을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세아는 9.8%에 불과하나, 만 1세아 이후 증가하여 30% 수준을 웃돌고 만 4세 이후는 22.4%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26.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모의 취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기 기간은 평균 6.4개월로 나타나며, 5~10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아 입소 대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입소 대기 기간은 영아에 비해 유아인 경우, 그리고 대도시 지역과 취업모인 경우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대도시 지역의 맞벌이 가구들이 원하는 기관에 입소하는 데 어려움이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II-2-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 경험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 미만	10~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전체	22.6	(3,343)	20.8	15.3	11.2	7.0	22.2	14.9	8.7	100.0(713)	6.4	
영유아 구분												
영아	21.5	(1,802)	23.5	18.2	13.3	10.5	17.1	11.0	6.4	100.0(357)	5.0	
유아	23.8	(1,541)	18.2	12.4	9.3	4.0	26.8	18.4	10.8	100.0(356)	7.6	
X ² (df)/t	-						44.7(7) ^{***}				4.0 [*]	
연령												
0세	9.8	(802)	26.0	26.0	12.3	4.1	16.4	9.6	5.5	100.0(75)	4.2	
1세	30.6	(538)	17.2	15.9	15.2	16.6	18.6	13.1	3.5	100.0(151)	5.1	
2세	30.4	(462)	29.1	17.0	11.3	7.1	16.3	9.2	9.9	100.0(131)	5.4	
3세	33.5	(503)	21.2	10.0	8.2	4.7	28.2	18.2	9.4	100.0(145)	7.3	

(표 II-2-1 계속)

구분	대기 경험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다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 미만	10~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4세	22.4	(556)	19.8	9.9	10.8	2.7	25.2	16.2	15.3	100.0(120)	8.2
5세 이상	17.3	(482)	12.4	18.6	9.7	4.4	25.7	21.2	8.0	100.0(91)	7.3
$X^2(df)/F$		146.7(5)***					92.3(35)***				6.1***
지역규모											
대도시	26.3	(1,348)	20.9	13.6	11.7	7.6	19.3	16.7	10.1	100.0(337)	6.8
중소도시	21.1	(1,325)	19.0	17.6	10.0	6.5	24.0	13.6	9.3	100.0(270)	6.3
읍·면	16.8	(670)	23.7	14.4	13.4	7.2	27.8	11.3	2.0	100.0(106)	4.6
$X^2(df)/F$		24.5(2)***					20.2(14)				4.0*
모취업여부											
취업	21.9	(1,056)	17.4	15.3	14.5	4.1	20.7	19.4	8.6	100.0(236)	6.9
휴직중	24.8	(152)	27.8	8.3	2.8	-	25.0	25.0	11.1	100.0(40)	6.8
미취업	22.8	(2,115)	20.9	15.6	10.5	9.2	23.1	12.2	8.6	100.0(434)	6.2
모부재	32.0	(20)	85.7	14.3	-	-	-	-	-	100.0(3)	1.2
$X^2(df)/F$		2.0(3)					-				2.1#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47.

$p < .1$, * $p < .05$, *** $p < .001$

한편 입소 대기 신청을 한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만 3세 이후 50%선을 육박하며, 대도시 지역은 48.3%, 읍·면 지역은 46.2%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 입소순위 적용 준수가 필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2-2〉 입소 대기 신청 기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병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43.7	3.2	23.1	12.7	1.8	3.0	0.5	11.9	0.1	100.0(697)
영유아 구분										
영아	38.6	3.9	32.1	23.4	1.4	-	-	0.6	-	100.0(352)
유아	48.6	2.6	14.9	2.3	2.1	5.7	1.0	22.5	0.3	100.0(345)
연령										
0세	36.6	1.4	19.7	39.4	1.4	-	-	1.4	-	100.0(73)
1세	37.4	3.4	27.9	29.9	1.4	-	-	-	-	100.0(150)
2세	41.0	5.8	42.4	8.6	1.4	-	-	0.7	-	100.0(129)

(표 II-2-2 계속)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병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수)
3세	50.3	2.4	21.3	2.4	3.6	4.7	0.6	14.2	0.6	100.0(141)
4세	47.6	1.9	9.5	1.9	1.0	6.7	1.9	29.5	-	100.0(116)
5세	46.4	3.6	10.0	3.6	0.9	6.4	0.9	28.2	-	100.0(88)
지역규모										
대도시	48.3	2.9	24.5	10.9	0.3	2.7	-	10.4	-	100.0(333)
중소도시	37.4	2.6	23.0	14.3	3.4	3.0	-	15.8	0.4	100.0(260)
읍·면	46.2	5.4	18.3	14.0	3.2	3.2	4.3	5.4	-	100.0(104)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48.

2) 어린이집 대상 2013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64.2%에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서 대기 아동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은 각각 87.6%, 79.2%로 높게 나타났다(표 II-2-3 참조).

입소 대기 영유아 가운데 장애아가 아닌 일반 영유아 수는 어린이집의 현원 대비 60.5%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원 대비 입소 대기아 비율이 210.4%로 현원의 2배 이상의 영유아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법인 14.3%, 민간 23.7%, 법인·단체 31.4%, 가정어린이집이 32.0%로 기관 유형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인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비율은 71.%로 높은 수준이나, 해당 기관은 각 작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위한 것으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입소 대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한 정원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의 입소 대기 영유아 비율이 11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외 지역들에 비해 대도시 지역의 입소 순위 적용에 민감성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한편, 전체 장애보육 영유아 대비 입소 대기 장애 영유아 비율은 74.1%로 나타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대기자는 120.3%로 가장 높고,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서 116.5%로 가장 높아, 장애 영유아 대기자 수는 대도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미화 외, 2012).

〈표 II-2-3〉 입소 대기 영유아 현황 및 분류

단위: %(개소, 명)

구분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	수	입소 대기 영유아			
			일반	현원	장애	현원
전체	64.2	(4,000)	60.5	(175,873)	74.1	(1,820)
기관 유형						
국공립	87.6	(463)	210.4	(30,479)	120.3	(815)
사회복지법인	56.6	(326)	14.3	(22,669)	39.5	(495)
법인·단체	60.5	(336)	31.4	(20,602)	20.2	(176)
민간	61.5	(1,192)	23.7	(63,555)	41.8	(260)
가정	59.5	(1,462)	32.0	(25,476)	36.1	(51)
직장	79.2	(221)	71.3	(13,093)	41.2	(22)
X ² (df)/F	155.5(5)***		92.9**		37.9**	
소재지						
대도시	74.4	(1,480)	115.3	(68,314)	116.5	(775)
중소도시	61.1	(1,692)	34.2	(70,171)	39.8	(849)
읍·면 지역	52.3	(828)	11.0	(37,388)	54.4	(196)
X ² (df)/F	121.6(2)***		51.1***		7.8***	
2009년 조사	35.6	(3,110)	-	-	-	-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1.

** $p < .01$, *** $p < .001$

또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대기 중인 기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4 참조).

〈표 II-2-4〉 어린이집 입소 대기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인근 타 어린이집 없음	프로그램 ·운영선호	우수교사 있음	저렴한 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통학차 량운행	기타	계(수)
전체	6.4	41.2	10.4	19.6	13.8	1.0	7.6	100.0(2,544)
기관 유형								
국공립	2.8	11.7	0.7	4.4	77.6	0.1	2.6	100.0(401)
사회복지법인	2.6	61.6	14.2	13.7	2.8	-	5.1	100.0(185)
법인·단체	2.8	49.8	15.4	18.2	7.5	1.0	5.2	100.0(199)
민간	9.4	50.7	12.6	17.2	1.6	1.2	7.3	100.0(721)
가정	7.8	40.1	11.9	31.2	0.7	1.3	7.0	100.0(868)
직장	2.0	43.8	6.4	11.4	7.8	0.7	27.9	100.0(170)
X ² (df)				1,804.8(30)***				

(표 II-2-4)

구분	인근 타 어린이집 없음	프로그램 ·운영선호	우수교사 있음	저렴한 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	통학차 량운행	기타	계(수)
소재지								
대도시	5.4	40.6	11.0	17.3	16.6	1.2	7.8	100.0(1,080)
중소도시	6.3	43.9	9.7	22.4	10.9	0.7	6.1	100.0(1,034)
읍·면 지역	9.2	35.8	10.7	18.6	13.8	1.0	10.8	100.0(430)
X ² (df)			43.1(12) ^{***}					
2009년 조사	1.4(6)	63.7(265)	7.2(30)	2.9(12)	17.3(72)	-	7.5(31)	100.0(416)

주: 2009년 조사에서는 '통학차량 운행함' 항목 없음.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81.

^{***} $p < .001$

기관 유형별로 대기 발생 사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높아,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배적인 선호를 보여준다. 또한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도시 지역에 비해 인근 타 어린이집이 없어서 대기하게 되는 낮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높고, '기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도시나 중소도시와는 구분되는 입소 대기 원인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지역 규모별로 보육 여건의 상이성을 고려한 입소 순위 적용의 재량권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표 II-2-4 참조).

〈표 II-2-5〉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준수하지 않음	대체로 준수	반드시 준수	계(수)	X ² (df)
전체	10.1	52.1	37.8	100.0(3,995)	
기관 유형					
국공립	2.1	20.9	77.0	100.0(462)	
사회복지법인	9.2	54.2	36.6	100.0(325)	
법인·단체	8.5	48.3	43.2	100.0(335)	551.2(10) ^{***}
민간	13.5	60.3	26.2	100.0(1,192)	
가정	10.6	60.3	29.1	100.0(1,460)	
직장	8.0	17.5	74.5	100.0(221)	
소재지					
대도시	7.1	49.1	43.8	100.0(1,480)	
중소도시	11.1	53.4	35.5	100.0(1,689)	52.2(4) ^{***}
읍·면 지역	13.4	54.9	31.7	100.0(826)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79.

^{***} $p < .001$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아동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89.9%로 나타나, 입소 아동 결정에 「영유아보육법」상 입소 우선순위를 대체로 적용·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5 참조).

특히 기관 유형별로는 「영유아보육법」상 명시적으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아동을 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반드시 준수’한다는 응답이 77.0%로 현저히 높고, 이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2-5 참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현황과 우선순위 적용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행 입소 우선순위 적용 대상 이외에 입소자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가 49.3%로 가장 많고,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30.8%,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4.5%, 대기 기간이 긴 경우 13.9% 순으로 나타난다(양미선 외, 2012: 164). 또한 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대부분의 예외 기준 적용 비율이 높다고 지적된다. 특히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가 61.1%,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49.1%, 대기 기간이 긴 경우가 21.6%로 해당 비율은 도시 지역의 약 2배에 달한다. 이와 유사하게 예외 적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지역이 47%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지역이 29.9%, 읍·면 지역이 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리 고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입소 우선순위 개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이용 부모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93.8%로 가장 많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89.9%,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83.8%, 장애 부모 자녀 80.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자녀는 이에 비해 낮은 70.6%를 차지하였다. 반면 입양된 영유아(28%)와 3자녀 이상 가구(37.9%),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 자녀(37.9%), 다문화가족 영유아(51.1%)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부모들은 1순위 대상자로 맞벌이 가구 자녀가 4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가구 32%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밖의 대상들은 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맞벌이 가구 자녀는 67.1%, 저소득 가구 52%, 저소득 한부모는 25.5% 순이다(양미선 외, 2012: 168).

그밖에도 현행 맞벌이 가구 자녀의 적용 원칙을 준수하는 기관은 약 59%로 조사되어 현행 맞벌이 가구 적용 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맞벌이 가구 자녀의 우선 입소 자격요건은 1일 8시간, 월 20시간 근로이나, 해당 원칙을 확인할 방법을 모르거나(8.9%), 관련 서류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3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미선 외, 2012: 168).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 대기 기간은 평균 6.4개월에 달하며, 대도시 지역과 취업모의 대기 기간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대도시 지역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경우’가 별도로 고려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청 대기 기간은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3. 외국 사례 및 시사점

보육소 대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소 입소순위 적용 기준을 정교화한 일본과, 보육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인 프랑스의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본

일본은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와 이외 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수화하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소 입소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1) 항시 주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3) 질병 중이거나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동거 중인 가족을 상시 간병 중인 경우 5) 지진, 풍수해, 화재 그 외 재해 복구 중인 경

우 6) 이외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례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1) 대도시 지역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동경도 시나가와 구와 세타가야 구, 그리고 요코하마 시의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경도 시나가와 구

동경도는 대상별 기본 점수와 조정지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1) 기본 점수

동경도 시나가와 구의 보육소 입소는 주요 대상별로 최대 20점을 부여하나, 재택, 간병 간호 17점, 심신 장애 16점, 병원 등 시설 동행 16점, 재택 12점, 출산 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대상으로는 출퇴근 근로와 자영 근로, 질병·부상 중, 심신 장애, 재해 복구 시이며, 근로 내정에 관한 항목을 별도 규정하여 최대 12점을 적용한다(표 II-1-1 참조).

한편 각 대상별 세부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출퇴근 근로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1달 근로 일수가 12일~20일 이상, 주간 4시간~8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근로와 자영업의 적용은 가장 최근 근무 실적을 토대로 지수화한다. 병원 시설 동행 항목은 한 달에 12~16일 이상 하루 4~6시간 이상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단, 동일 지수인 경우 우선순위는 1) 기본 점수 고득점 2) 계층(과세액)이 낮은 사람 3) 동거 조부모가 없는 경우 4) 구내 체재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적용한다.

5) 동경도 시나가와 구(www.city.shinagawa.tokyo.jp)
 동경도 세타가야 구(www.city.setagaya.lg.jp)
 요코하마 시(www.city.yokohama.lg.jp)

〈표 II-3-1〉 동경도 시나가와 구의 보육소 입소 기본 지수

번호	보호자의 상황		세목	지수
1	출퇴근 근로, 자영	1개월 이상 근로	1달 근로 일수가 20일 이상, 주간(낮)에 8시간 이상 근로	20
			1달 근로 일수가 20일 이상, 주간(낮)에 7시간 이상 근로	19
			1달 근로 일수가 18일 이상, 주간(낮)에 8시간 이상 근로	19
			1달 근로 일수가 20일 이상, 주간(낮)에 6시간 이상 근로	18
			1달 근로 일수가 18일 이상, 주간(낮)에 7시간 이상 근로	18
			1달 근로 일수가 16일 이상, 주간(낮)에 8시간 이상 근로	18
			1달 근로 일수가 16일 이상, 주간(낮)에 6시간 이상 근로	16
			1달 근로 일수가 12일 이상, 주간(낮)에 8시간 이상 근로	16
			1달 근로 일수가 20일 이상, 주간(낮)에 4시간 이상 근로	14
			1달 근로 일수가 16일 이상, 주간(낮)에 5시간 이상 근로	14
			1달 근로 일수가 16일 이상, 주간(낮)에 4시간 이상 근로	12
			1달 근로 일수가 14일 이상, 주간(낮)에 5시간 이상 근로	12
			1달 근로 일수가 12일 이상, 주간(낮)에 6시간 이상 근로	12
			1달 근로 일수가 12일 이상, 주간(낮)에 4시간 이상 근로	10
			이상의 경우 이외에도 근무형태상 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8
2	재택	1달 근로 일수가 16일 이상,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이며 월수입이 25,000엔 이상의 근로	12	
		1달 근로 일수가 12일 이상,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 월수입이 25,000엔 미만의 근로	10	
		이상의 경우 이외에도 근무형태상 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8	
3	미 존재		사별, 이별, 행방불명, 구속	20
4	질병 부상	입원	대략 3개월 정도의 입원 또는 입원을 결정한 경우	20
		자택 요양	항상 병상에 있으며, 중증의 정신적 질환으로 병원에 통원하고 있는 경우	8~20
			안정을 요하는 상태(자신의 주변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	
			부상, 질병으로 보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일반요양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 가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반요양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가사는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심신 장애	신체장애자 수첩 1급에서 3급, 사랑의 수첩 1도에서 3도		20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사랑의 수첩 4도		16
		신체장애자 수첩 4급		12
		신체장애자 수첩 5급 이하		8
5	병원, 시설 등에 동행	한 달에 16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시설통원시 동행		8~ 16
		한 달에 12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시설통원시 동행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동행을 요하는 경우		

(표 II-3-1 계속)

번호	보호자의 상황	세목	지수
5	재택 간병, 간호	낮 동안 한사람이 항상 관찰하고, 전면적으로 신체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 상기 사항 이외, 항상 관찰하고, 전면적으로 신체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 병자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항상 간병, 간호하고 있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기 사항이외의 간호 및 간병	8~17
6	재해	재해로 인한 가옥의 손상, 재해 복구로 인해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20
7	출산	출산전후 휴양을 위해 보육 할 수 없는 경우	8
8	근로 내정	한 달에 20일 이상을 근무하고, 1일 8시간 이상의 상근근로 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내용 이외의 근로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	12 8
	구직활동	구직활동 중	4
9	기타	낮 동안 취학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보육에 종사할 수 없 는 경우(번호 1 준용) 앞의 각호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 명백히 보육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20 8~20

주: 기본 지수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기본지수는 보호자(부모)별로 각각의 상황에 근거하여 산정한 후, 합산함.
- * 동일 지수인 경우 우선순위는 1) 기본 지수가 고득점 2) 계층(과세액)이 낮은 사람 3) 동거 조부모가 없는 사람 4) 구내(區內) 체재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선정함.
- * 출퇴근 근로와 자영업은 가장 최근의 근무 실적을 기초로 지수화 함.
- * 출퇴근 근로와 자영업의 지수를 인정할 때, 원칙적으로 시급 또는 동경도의 최저임금으로 구분하여 근무 시간을 산정함. 단, 산출 시간이 근무(내정)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 시간으로 산정함.
- * 1일이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를 말함. 이외 시간대에 대하여는 3분의 2의 시간으로 산정함.
- * 육아휴업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휴직은 원칙적으로 내정, 구직 활동으로 취급함.
- * 입소 신청 마감일 현재 급여명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1개월 이상의 실적이 없는 사람, 근로 상황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 시간과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근로 내정으로 분류함.
- *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 외로 분류함.

자료: 일본 品川區 홈페이지(www.city.shinagawa.tokyo.jp)(검색일: 2013년 5월)

(2) 조정 지수

조정 지수는 모두 17개 항목으로 규정된다. 즉 한부모 가족과 생계책임자가 실업 도산 등으로 생계유지 근로 중인 경우(6점), 저소득층(생활보호수급자)(4점) 등이며, 형제·자매가 구내 인가보육원에 재원하고 있는 구내 거주 아동이 형제·자매가 있는 구내 인가보육원으로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와 인가 외 보육시설에 계속하여 맡기는 경우(3점) 등에 부여된다. 이외에도 형제·자매로서 동시에 보육소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1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표 II-3-2〉 동경도 시나가와 구의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

번호	조정지수 가감을 적용하는 세대의 상황	지수
1	생활보호 수급 세대	4
2	한부모 가족 세대 또는 이에 준하는 세대	6
3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실업, 도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가 필요할 때	6
4	시나가와구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다른 구내(區内)의 인가보육원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 제1희망으로 동일구내에 있는 인가보육원으로 전원 신청을 한 경우	1
5	형제·자매가 구내인가보육원에 재원하고 있는 구내 거주 아동이, 형제·자매가 있는 구내 인가보육원으로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	3
6	집단보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등으로서, 특별지원 보육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4
7	입소 신청아동이 장애로 인해, 통학시설(시나가와 아동학원 등)에 통학하거나, 또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통원하고 있는 경우	2
8	입소 희망 아동을 인가 외 보육시설(도도부현에 신고되어 있는 시설 중 인증 보육소는 제외)에 계속하여 맡기고 있는 경우	3
9	입소 희망 아동을 인증보육소에 맡기고 있는 경우	2
10	입소 희망 보육소가 모두 야간 보육소로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2
11	연령 제한이 있는 시나가와 구의 인가 보육소에서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4월에 전원할 경우에만 적용)	2
12	보호자가 단신 부임을 하고 있는 경우	1
13	구직 중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1
14	형제·자매로서 동시에 보육원 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전입 예정자는 제외)	1
15	근무하는 곳(직장)에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단 직장이 위험 업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함.	-1
16	동일 세대에 미 신청아동이(간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제외) 있는 경우	-1
17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육료(구립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졸업 아동, 퇴원 아동도 포함)	-10

주: 조정 지수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내 인가보육원'에는 유보일체화 시설, free school 니시 고반다 유아교육시설, 인정어린이원을 포함함.

* 1에 대해서는, 기본 지수가 근로 요건에서 최고점(부모 모두)인 세대는 더 이상 가산하지 않음.

* 8, 9에 대해서는 신청 마감일에 근로를 하고 있으며, 월 20,000엔 이상의 보육료로 아동을 맡기고 있는 경우 가산함.

* 4, 5, 8, 9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일 이상 근무하며, 하루 매일 4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 대상으로 함.

* 10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단시간 근무를 취득(예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 조정 지수 가산은 보호자가 조정 지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함.

자료: 일본 品川區 홈페이지(www.city.shinagawa.tokyo.jp)(검색일: 2013년 5월)

나) 동경도 세타가야 구

동경도 세타가야 구는 보육소 입소 순위에 대한 기준 점수와 조정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지수 세대의 우선순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즉 맞벌이 가구 등 대상별 세부 적용 기준과 저소득층 등 24개 항목에 달하는 조정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지수일 경우 단계별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1) 기준 점수

기준 점수는 최대 50점으로 해당 대상은 가정외 근로와 자영업자 질병, 장애, 간병, 재해, 부모가 미 존재하는 경우이며, 근로 내정 개업 예정 30점, 출산 15점, 구직 10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가정 외 근로와 재택 근로시에는 주 3, 4, 5일 이상, 주당 12, 16, 20, 25, 30, 35, 40시간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간병 항목은 일주일에 3일 이상~5일 이상 동행과 동시에 주 12시간~30시간 이상 동행, 구직 항목은 주 3일 이상~5일 이상, 1주일에 12시간 이상~37시간 이상 근로로 각각 세분화하고 있다.

〈표 II-3-3〉 동경도 세타가야 구 보육소 입소 기준 점수

번호	유형	보호자(부모)의 상황 (동거친족, 그 외의 사람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지수	실시 기간
		세목			
1	가정 외 근로	출퇴근 근로, 가정 외 자영	주 5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	50	최장 취학 전까지
			주 5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근로	45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로	40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	35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로	3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로	25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근로	2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③	15	
2	재택 근로	자영	주 5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	50	
			주 5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근로	45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로	40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	35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로	3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로	25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근로	2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③	15	
		재택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	2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③	15	

(표 II-3-3 계속)

번호	유형	보호자(부모)의 상황 (동거친족, 그 외의 사람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지수	실시 기간	
		세목				
3	출산 질병 장애	출산	출산전후 휴양을 위해 보육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15	5개월 이내,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전후 각각 2개월)	
		질병	1개월 이상 입원	50		최장 취학 전까지
			가정내 정신적 질환	상시 와병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3급 정도 이상 위의 급수 이외의 상태	50	
				안정을 요하는 상태 (항상 병상에 있지 않는 정도)	30	
			일반 요양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태	30	
		장애	신체장애자 수첩 1,2급, 청각장애자 3급 이상,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3급 이상, 사랑의 수 첩 소지자	50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청각장애자 4급 이하 소 지자	30		
			신체장애자 수첩 4급 이하 소지자	20		
			4	간병	일주일에 5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30시간 이상 동행	
시설 동행	일주일에 5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20시간 이상 동행	45				
	일주일에 4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24시간 이상 동행	40				
	일주일에 4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16시간 이상 동행	35				
	일주일에 3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18시간 이상 동행	30				
	일주일에 3일 이상 동행함과 동시에 주 12시간 이상 동행 ^③	25				
	간병	중증 장애자 등을 하루 종일 간병	50			
항상 관찰과 간병(식사, 배설, 목욕 간병)을 필 요로 하는 경우(하루 종일 간병은 제외함)		40				
위에 기술한 내용 이외의 간병		20				
5		재해	재해로 인한 가옥 손상, 기타 재해 복구로 말미암아 보 육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50	6개월 이내
6	구직	근로 내정, 개업 예정	주 5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7시간 이상 근로	30	1개월 이내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로	25		
			주 4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로	20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로	15		
			주 3일 이상 근무함과 동시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 ^③	10		
		구직	구직을 위해 하루 종일 외출하고 있는 상태	10	2개월 이내	
7	기타	취학 등	취학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하루 종일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표 II-3-3 계속)

번호	유형	보호자(부모)의 상황 (동거친족, 그 외의 사람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지수	실시 기간
		세목			
7	기타	미존재 등	사망, 이혼, 행방불명, 구속, 이혼을 전제로 별거 하고 있는 상황	50	최장 취학 전까지
		앞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와는 별도로, 구청장이 보 육을 필요로 한다고 명백히 인정한 경우		*②	

- 주: 1) 근로와 취학 시간에 통근, 통학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함. 근무 일수, 근무 시간은 실적을 우선시 함.
2) 각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위의 표에 의거하여 기준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당해 세대의 기준 지수로 함.
3) 간병은 3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함.
4) *①은 번호 1을 준용함.
5) *②은 번호 1에서 6을 준용함.
6) *③은 1일 근로 및 간병 시간은, 낮 시간 동안 최저 4시간 근로와 간병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7) 세타가야구 거주자, 근무자 이외의 사람(전입 예정자는 제외)에게는, 본 표에 의한 기
준점수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일본 世田谷區 홈페이지(www.city.setagaya.lg.jp)(검색일: 2013년 5월)

(2) 조정 기준

조정 기준은 총 24개 항목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대상 순으로 살펴보면, 동거
친족이 없는 한부모 가족 또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육아휴직 종료로
재입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20점을 부여하며, 다음으로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
동거 친족이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아동인 경우
는 10점을 부여한다. 반면 보호자가 신청 아동을 자택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 등)나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60세 미만)가 있는 경우는 6점을 감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3-4〉 동경도 세타가야 구의 보육소 입소 조정 점수

번호	조건	지수
1	생활보호세대	+10
2	한부모 가족(동거 친족 없음) 또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
3	한부모 가족 세대로서 동거 친족이 있으나,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10
4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단신 부임인 세대	+3
5	근로 실적이 1년 이상의 경우	+2

(표 II-3-4 계속)

번호	조건	지수
6	출산 휴가 종료 또는 육아휴직 종료 예정자 (4월1일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복귀자를 포함함)	+5
7	육아휴직 취득으로 일시 퇴소하였다가, 육아휴직 종료로 재 입소를 신청하는 경우	+20
8	보호자가 신청 아동을 자택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제외)	-6
9	보호자가 신청 아동을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	-1
10	근로 예정자로서 1월 중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4월1일 입소예정자에 적용)	+3
11	근로 예정자로서 2월 중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4월1일 입소예정자에 적용)	+2
12	근로 예정자로서 3월 중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4월1일 입소예정자에 적용)	+1
13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소유자로서 보육에 현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5
14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4급 이상,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
15	동일 세대 내에 전적으로 간병을 요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세대원(신청 아동은 제외)이 있는 경우	+2
16	신청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종합복지센터 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근로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17	신청 아동 이외의 아동으로 인해 출산휴가 중으로서, 출산 휴가 종료 후에 계속하여 육아휴가를 취득하는 경우	-5
18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가(60세 미만) 무직자로서 신청 아동의 보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6
19	신청 아동(전학 신청자를 포함) 이외의 형제·자매(졸업 예정 아동 제외)가 재원 중이거나 또는 동시에 신청을 한 경우	+5
20	신청 아동을 보육실, 보육마마, 인종보육소, 베이비시터 등에 항상 유상으로 맡기고 있는 경우	+6
21	신청 아동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척에게 항상 유상으로 맡기고 있는 경우	+1
22	신청 아동을 매일 유치원에 맡기고 있는 경우	+1
23	특별 사정으로 인한 전원(형제가 각각 다른 보육소에 입소, 원거리, 전근, 전입 등)	+3
24	세타가야 구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전입 예정자 제외) 으로서 근무지가 세타가야구인 경우	-10

- 주: 1) 번호 2, 3, 18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번지 수 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동거로 간주함.
- 2) 번호 4는 근무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3) 번호 6과 번호 7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 4) 번호 13과 번호 14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 5) 번호 6과 23~24에 걸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호 6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6) 번호 23~24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지수를 그 세대의 조정 기준 지수로 함.
- 7) 번호 6은 기준지수와 합산하여 5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점을 합산 점수로 함.
- 8) 번호 20은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하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단, 형제·자매를 동시에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베이비시터 등 이란 재택 보육서비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를 지칭함.

- 10) 신청 아동을 친구 또는 지인에게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번호 21을 준용함.
- 11) 조정 기준 지수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적용함.
- 12) 세타가야구의 거주자, 근무자가 아닌 사람(전입예정자를 제외)에게는 본 표에 의한 지수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일본 世田谷區 홈페이지(www.city.setagaya.lg.jp)(검색일: 2013년 5월)

(3) 동일지수 세대의 우선순위

동일 지수 세대인 경우는 다음 <표 II-3-5>에서와 같이 모두 4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즉 1단계는 보육 실시 기준 점수가 높은 사람이며, 다음으로는 계층(소득세액이 낮은 순서)이 낮고, 신청 아동을 유상으로 맡긴 기간이 긴 세대 순으로 적용한다.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각 유형간 우선순위는 1) 부모 미존재 2) 질병, 장애 3) 외근 4) 가정 외 자영 5) 간병 6) 가정내 노동 7) 출산 8) 근로 내정, 개업 예정 9) 취학 등 10) 구직 순이다.

<표 II-3-5> 동경도 세타가야구의 동일 지수 세대의 보육소 입소순위 적용 단계

우선단계	조건
제1단계	보육 실시 기준 지수의 점수가 높은 사람
제2단계	계층이 낮은 세대순(동일 계층의 경우는 소득세액이 낮은 순서, 세금과 관련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계층으로 보고 심사를 실시)
제3단계	신청 아동을 유상으로 맡기고 있는 기간이 긴 세대(전원 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제4단계	유형간 우선순위(①~⑩의 순서) ① 미 존재 등 ② 질병, 장애 ③ 외근 ④ 가정 외 자영 ⑤ 간병 ⑥ 가정 내 노동 ⑦ 출산 ⑧ 근로 내정, 개업예정 ⑨ 취학 등 ⑩ 구직

자료: 일본 世田谷區 홈페이지(www.city.setagaya.lg.jp)(검색일: 2013년 5월)

다) 요코하마 시

요코하마 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입소 선정 기준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각 대상별로 점수가 아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 기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후 여러 명의 아동이 동일 등급에 위치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정 지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때 세부 적용은 세대 상황, 근로 상황, 한부모 세대, 형제 상황 등이 고려된다.

(1) 입소 선정 기준

보육소 입소 적용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표 II-3-6>과 같다. 즉 입소 순위는 A부터 I 등급 순으로 적용하고, 부모의 등급이 낮을 경우는 낮은 등급을 적용

한다. 또한 65세 미만 조부모 등 친척의 보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 II-3-6〉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적용 기본 방침

* 입소순위는 ABCDEFGHI의 등급 순서로 결정한다. 즉 A가 가장 높은 등급이다.
* 부모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동거 중인 조부모 등 친척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장애아동 및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하여는 이 선정 기준을 기초로 별도로 선정한다.
* 선정 시, 보육이 필요한 이유별로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등급표'를 토대로 A부터 I까지로 분류한다. 이후 '그 외의 세대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정도를 판단하여 입소 순위를 판단한다.
* 자택 내, 외 노동은 원칙적으로 낮에 4시간 이상, 월 16일 이상 노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 '11. 기타' 등급은 해당 아동과 세대의 상황에 따라 복지보건센터의 장이 판단한다.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각 대상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보육 수요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A등급 부여 대상은 자택외 노동 즉 출퇴근과 자영 노동, 질병·부상, 장애 부모, 친족 간병 중인 부모, 재해 복구와 한부모가족 세대이다. 다음으로 자택내 노동은 B등급, 통학은 E등급, G등급까지 부여하고, 출산 전후(출산 전후 8주 동안)은 G등급, 구직 중인 부모는 H등급을 각각 부여한다(표 II-3-7 참조).

〈표 II-3-7〉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선정 기준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이유 및 상황		등급
1. 자택 외 노동 (출퇴근, 자택 외 자영)	월 20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의 경우	A
	월 20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B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24시간 이상의 경우	C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16시간 이상, 24시간미만의 경우	D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28시간 이상의 경우	E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16시간 이상, 28시간 미만의 경우	F

(표 II-3-7 계속)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이유 및 상황		등급
2. 자택내 노동 (재택근무, 재택내 자영)	월 20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의 경우	B
	월 20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경우	C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24시간 이상의 경우	D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16시간 이상, 24시간미만의 경우	E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28시간 이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경우	F
	월 16일 이상 근로에 종사함과 동시에 1주일 근로 시간이 16시간 이상, 28시간 미만으로 내정되어 있는 경우	G
3. 출산전후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을 전후하여 각각 8주 동안, 출산 준비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	G
4. (1) 질병, 부상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치료와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택요양으로서 항상 와병 중에 있는 경우	A
	통원 치료와 함께 항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등, 일상적인 보육이 곤란한 경우	C
	통원 치료와 함께, 한 달에 16일 이상, 그리고 1주일에 16시간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므로 보육이 곤란한 경우	E
4. (2) 장애	신체장애자 수첩 1급~2급, 정신 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2급, 사랑의 수첩(치료수첩)을 교부받아 보육이 항상 곤란한 경우	A
	신체장애자 수첩 3급 또는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3급을 교부받아 보육이 곤란한 경우	B
	신체장애자 수첩 4급을 교부받아 보육이 곤란한 경우	E
5. 친족간병	와병자와 중증 심신 장애자(아동)의 간병, 입원, 통원, 시설 치료를 위한 동반으로, 월 20일 이상 그리고 1주일에 40시간 이상 보육이 곤란한 경우	A
	병자와 장애자(아동)이 간병과 입원, 통원, 시설 치료를 위한 동반으로, 월 16일 이상 그리고 1주일에 28시간 이상 보육이 곤란한 경우	C
	병자와 장애자(아동)이 간병과 입원, 통원, 시설 치료를 위한 동반으로, 월 16일 이상 그리고 1주일에 16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보육이 곤란한 경우	F
6. 재해복구 중사	재해, 풍수해, 화재 및 기타 재해 복구하고 있는 경우	A
7. 통학	취직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한 달에 16일 이상,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직업훈련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	E
8. 구직 중	구직 중인 경우(입소요건은 3개월. 이 기간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면 퇴소)	H

(표 II-3-7 계속)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 이유 및 상황		등급
9. 한부모 가족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에게 근로, 구직 활동, 직업훈련 등을 행하여 자립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복지보건센터장이 판단한 경우(입소 요건은 3개월. 이 기간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면 퇴소)	A
10. 시외 거주	요코하마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입예정자는 제외)	I
11. 기타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 복지보건 센터장이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 경우	*1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한편 위의 적용 시 기타 세대는 <표 II-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 가족 세대, 저소득층(생활보호세대), 육아휴직 복귀 부모 등이다.

<표 II-3-8> 요코하마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타 세대 적용 지표-등급 상향 적용 지표

- (1) 한부모 세대
- (2) 생활보호세대(근로, 구직 활동,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복지보건센터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 한정함)
- (3) 주 생계자의 실업
- (4)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 인가 영아 보육소 등을 졸업한 아동
- (4) 육아휴직으로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을 졸업 전에 퇴소하고, 복귀 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
- (5) 육아휴직으로 인가원을 퇴소하고 복귀 시에 인가보육소에 재입소 신청을 하는 경우(2등급 상향 조정)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2) 복수의 아동이 동일 등급인 경우 입소 우선순위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동일 등급에 있을 경우에는 '조정지수 일람표'에 따라 지수를 확정하고 입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해당 규정은 보육의 대체수단 여부, 보호자의 장애 등 가구 여건, 그리고 부모의 근로 여건, 한부모 가족, 형제 상황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3-9>와 같다.

<표 II-3-9>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보육 대체 수단

내용	지수	비고
65세 미만의 친족에게 신청아동을 맡기고 있음.	-1	
전원(園)(전출을 동반하는 경우 또는 형제를 동일 보육원에 입소시키기 위한 전원은 제외함. 인정어린이원으로부터 전원하는 경우도 포함)	-1	

(표 II-3-9 계속)

내용	지수	비고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지원, 요코하마 시 가정 보육사업, 인가 영아보육소를 육아휴업으로 인해 퇴소하고, 복귀시에 신청하는 경우	5	입소 기간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 요코하마 시 가정적 보육사업, 인가 영아보육소를 졸업한 아동(졸업 시에 육아휴업을 취득하고, 육아휴업이 종료와 함께 인가보육소에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5	보육소 졸업증명서 등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를 신청할 시점에 보육 요건이 있어, 신청 아동을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 요코하마 시 가정적 보육사업, 인가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이외의 시설에 유상으로 맡기고 있는 경우(일시보육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친족에게 유상으로 맡기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계약서 등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입소를 신청할 시점에 보육요건이 있어, 신청 아동을 요코하마 보육실, 가정보육복지원, 요코하마 시 가정적 보육사업에 맡기고 있는 경우	1	
아동을 직장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	-1	
보육 대체 수단과 관련하여 위에 기술한 내용 이외의 경우	0	

주: 주된 항목 1개만 적용함.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표 II-3-10〉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 조정 지수-세대 상황

내용	지수	비고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1, 2급, 사랑의 수첩(치료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 2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한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5	-본래 등급 유형이 '장애' 이외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점함.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이하 또는 정신 장애자 보건복지수첩 3급 해당자로서 현저하게 보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3	-장애자 수첩 등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1, 2급, 사랑의 수첩(치료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1, 2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한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3	-본래 등급 유형이 '장애'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점함.
보호자가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이하 또는 정신 장애자 보건복지수첩 3급 해당자로서 현저하게 보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2	-장애자 수첩 등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표 II-3-10 계속)

내용	지수	비고
동거 가족 중에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이상, 사랑의 수첩(치료수첩), 정신 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소지자가 있어 일상적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해당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이러한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동거 가족 중에 '요간병1' 이상의 사람이 있어 일상적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재택 간병에 한함)	2	-본래 등급 유형이 '친족 간병'의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별거 중인 가족 중에 신체장애자 수첩 3급 이상, 사랑의 수첩(치료수첩), 정신 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소지자가 있어 일상적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해당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이러한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별거 중인 가족 중에 '요간병1' 이상의 사람이 있어, 일상적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재택 간병에 한함)	1	-장애자 수첩, 개호보험증 등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계속적으로 입원을 하는 등, 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형태의 아동을 간병하고 있는 경우(시설 입소, 시설 방문 치료, 통학 시 동반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3	본래 등급 유형이 '친족 간병'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점함.
통신제 대학, 통신대학의 학생인 경우	-1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표 II-3-11〉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의 입소 조정 지수-근로 상황

내용	지수	비고
단신 부임	2	
양친 중 한쪽이라도 매달 2번 이상 야근을 하는 세대	1	양친 모두 야근을 하는 경우라도 2배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자택 외 자영업자이나, 직장이 자택과 직접 연결된 경우	-1	
근무 실적이 1개월 미만인 세대	-1	
본래 등급 유형이 '자택 내외 취로 내정' 또는 '구직 중'으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근로 중이나, 근로 일수와 시간이 보육소 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정, 구직 중'으로 표기되는 경우에 적용됨.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표 II-3-12〉 요코야마 시의 조정 지수-한부모 가족 등

내용	지수	비고
한부모 가족 세대로서 65세 미만의 동거 친족이 없는 경우	3	위 2줄의 점수와 중복 적용됨.
한부모 가족 세대로서 65세 미만의 동거 친족이 있는 경우	1	
본래 등급이 「9. 한부모 가족 세대 등」으로서 근로가 내 정되어 있는 경우	-2	
본래 등급이 「9. 한부모 가족 세대 등」으로서 구직 중인 경우	-7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표 II-3-13〉 요코야마 시의 조정 지수-형제 상황(어느 쪽이든 하나)

내용	지수	비고
형제들이 동일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재원 아동 이외의 아동의 육아휴업으로 인해 인가원을 퇴 소하고 복직 시에 재 입소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업의 대상 이 된 형제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이미 형제가 입소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 보육소에 입소 를 희망하는 경우(형제가 다니고 있는 어느 한 쪽의 보육 소에 전원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포함)	4	
이미 형제가 입소하고 있는 경우로서, 형제가 다니고 있는 시설 이외의 보육소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형제가 동시에 신청을 한 경우	3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3) 복수의 아동이 동일 등급, 동일 조정 지수인 경우의 입소 우선순위

동일 등급, 동일 조정 지수인 경우에는 다음 <표 II-3-14>의 순서대로 선정한
다. 즉 우선순위는 1) 재해 2) 질병, 장애 3) 자택 외 노동 4) 간병 5) 한부모 등
6) 재택노동 7) 자택외 노동 8) 취학 등 9) 출산 10) 구직 중의 순이며, 다음으
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많은 세대, 저소득층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표 II-3-14〉 요코야마 시의 보육소 입소 동일 등급, 동일 조정 지수인 경우의 우선순위 적용

유형	유형간 우선순위
1	① 재해 ② 질병, 장애 ③ 자택 외 노동 ④ 간병 ⑤ 한부모 등 ⑥ 재택 노동 ⑦ 자택 외, 재택 노동(내정) ⑧ 취학 등 ⑨ 출산 ⑩ 구직 활동 중
2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이 많은 세대
3	경제적 상황(합계 소득액)이 낮은 세대(낮은 세대를 우선함)

자료: 일본 横浜市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검색일: 2013년 5월)

2) 중소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에 속하는 센다이 시와 후쿠오카 시의 홈페이지 자료⁶⁾를 토대로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센다이 시

보육소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입소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가정보육 불가능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 아동을 결정하고 있다. 입소 대상자 선정은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한 기준 지수, 그리고 아동의 가정 상황 등에 관한 조정 지수를 합산한 지수를 적용한다.

(1)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기준 지수

부모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기본 점수는 10점이며, 해당 대상은 피고용인, 입원이나 자택요양 등 질병 또는 장애, 통원 시설 이용이나 입원 동반, 자택 간병 중인 부모이며, 재해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부모가 부재한 경우이다. 또한 자영업자는 9점,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 부모는 8점, 구직 활동 중인 부모에게는 3점이 부여된다.

각 대상별 세부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피고용자의 경우는 근로 일수는 주 4일과 주 5일, 월 19일 이하와 월 20일 이상으로 구분되며, 주간 근로 시간은 4, 5, 6, 7시간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내근 항목을 별도 규정하여 4점을 부여하되 월수입이 5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영업자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 항목은 입원인 경우 1개월 이상 10점, 2주일 초과~1개월 미만은 8점을 부여하고, 통원 치료인 경우는 항상 누워서 지내는 경우 등은 10점, 주 4일 이상 통원 치료인 경우는 6점,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는 8점을 각각 부여하며, 장애는 등급에 따라 7~10점을 부여한다. 간병 항목은 시설 동반인 경우는 주 5일 이상~주 4일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일일 소요시간 4시간 이상~7시간 이상으로 5~10점을 부여하고, 자택 간병인 경우는 간병 정도에 따라 6~10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학업이나 직업훈련은 주 4일 이상 주간 4시간 이상에 한하여 5~8점을 부여한다.

6) 센다이 시(www.city.sendai.jp)
후쿠오카 시(www.city.fukuoka.lg.jp)

〈표 II-3-15〉 센다이 시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준 지수

보호자의 상황			기준	
피고용자		주 5일 이상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20일 이상)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10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9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	8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7
		주 4일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19일 이하)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8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7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	6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5
자영업	사업주	주 5일 이상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20일 이상)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9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8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	7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6
		주 4일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19일 이하)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7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6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	5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4
	전업종사자 ²⁾	주 5일 이상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20일 이상)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8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7
			주간(낮) 근로 시간이 5시간 이상	6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5
		주 4일 근로 (불규칙적인 경우, 월 19일 이하)	주간(낮) 근로 시간이 7시간 이상	6
			주간(낮) 근로 시간이 6시간 이상	5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5
			주간(낮)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	4
	가산점 ³⁾	일상적으로 위험물(대형기계, 극약, 화기, 칼 등)을 취급하는 등 취업에 종사하여 근로 시간 중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소가 거택과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 지역이 아닌 경우(외근도 포함)		1		
내근(평균 월수입이 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영업 종사자 항목을 적용함)			4	
출산(출산 예정일을 전후하여 각각 2개월 이내)			8	
질병 등	입원	1개월 이상	10	
		2주일 초과~1개월 미만	8	
	통원	주 4일 이상	6	
	자택요양	항상 누워 지냄. 감염증 등	10	
		위에서 열거한 증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이 필요한 경우	8	
		일반 요양(운동, 외출이 제한되기는 하나 본인 주변의 신변 처리는 스스로 가능한 경우)	6	

(표 II-3-15 계속)

보호자의 상황			기준
질병 등	장애	간병을 요함(대략 1, 2급 또는 A급 판정).	10
		보육에 지장이 있음(대략 3급 또는 B급 판정).	7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4급 이하)	4
통원, 시설이용. 입원 동반	주 5일 이상	일일 소요 시간 7시간 이상	10
		일일 소요 시간 4시간 이상	7
	주 4일	일일 소요 시간 7시간 이상	8
		일일 소요 시간 4시간 이상	5
자택간병	상급 수준의 간병이 요구됨. (‘간병 인정 구분’으로 평가하였을 때 ‘간병 정도’가 4정도 이상)		10
	중간 정도의 간병이 요구됨. (‘간병 인정 구분’으로 평가하였을 때 ‘간병 정도’가 3정도 이상)		8
	가벼운 정도의 간병이 필요함. (‘간병 인정 구분’으로 평가하였을 때 ‘간병 정도’가 2정도 이상)		6
재해 등(화재 등의 사유로 가옥 손상, 그 외 재해 복구로 인해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10
구직 활동 중			3
학교, 직업훈련 학교 등의 통학	주 4일 이상이며, 주간(낮)에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7시간 이상		8
	주 4일 이상이며, 주간(낮)에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6시간 이상		7
	주 4일 이상이며, 주간(낮)에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5시간 이상		6
	주 4일 이상이며, 주간(낮)에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4시간 이상		5
부모 부재(사망, 이혼, 단신 부임, 행방불명, 구속 등)			10
기타(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항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10

주: 1) 근로 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함.

2) 부모가 함께 자영업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 쪽을 전업 종사자로 간주함.

3) 자영업자의 취업 형태 등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함. 단, 가산점을 부여한 후의 지수는 피고용자의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에 따른 기준 지수를 상한으로 함.

자료: 일본 仙台市 홈페이지(www.city.sendai.jp)(검색일: 2013년 5월)

(2) 아동의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 지수

조정 지수는 아동의 가정 경제 상황과 보육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수화한 것으로서 기준 지수와는 별도로 적용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육아휴직으로 퇴소한 아동이며(3점), 다음으로 입소 희망일을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보육소에 입소하고 있거나 동시에 신청한 경우(2점)에 부여한다. 반면에 65세 미만 조부모가 아동 보육을 도울 수 있는 경우는 1점을 감하여 적용한다.

〈표 II-3-16〉 센다이 시 보육소 입소 조정 지수

아동의 가정 상황 등	조정 지수
저소득 세대(세대의 총 소득이 기준액 ¹⁾ 이하인 경우)	2 또는 4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조부모가 아동 보육을 도울 수 있는 경우	-1
한부모 가족(모자 가정, 부자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3
형제·자매가 입소하고 있는 경우 ²⁾ (입소 희망일 시점에 형제·자매가 보육소에 입소하고 있거나 또는 동시에 신청한 경우)	2
장애 아동(입소를 신청한 아동이 집단 보육이 가능한 장애 아동인 경우)	3
육아휴업 취득으로 인해 퇴소한 아동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²⁾	3
주 생계유지자인 보호자 ³⁾ 가 도산 또는 해고로 인해 구직 활동 중인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감산, 가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점

주: 1) 세대 인원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은 상이함.

2) '형제·자매 입소' 와 '육아휴직 취득으로 인해 퇴소하였던 아동의 재신청'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함.

3) 한부모 가족 세대의 보호자 또는 한쪽 보호자가 피부양자(공제대상배우자 등)인 세대의 경우 다른 한 쪽의 보호자

자료: 일본 仙台市 홈페이지(www.city.sendai.jp)(검색일: 2013년 5월)

나) 후쿠오카 시

후쿠오카 시는 이외 도시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적용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크게 맞벌이 가구(자택외 노동, 자택 내 노동), 구직 중,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 동거 친족의 간호 간병, 취학, 재해 그리고 양친 부재 시로 구분된다.

대상별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 대상은 양친이 부재한 경우(사망, 행방 불명 등), 재해 복구 가정, 그리고 긴박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2순위는 1개월에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한부모 가정과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부모이며, 3순위자로는 정규직원,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160시간인 자영업자, 1개월에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한부모가정이고, 1개월 미만 입원, 심신 장애, 항상 병상 중인 자, 상시 간병 중인 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지역의 특징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적용 대상으로 가족협력자와 농업/어업 적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조정 지수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이외 각 대상별 적용 기준은 <표 II-3-17>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일수와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II-3-17〉 후쿠오카 시의 보육소 입소 분류 기준표(보호자 상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소 우선 순위
1. 자택 외 노동	피고용자	정규직원	회사, 사업체 등의 정규직원	3
		정규 직원 외	파트타임, 계약 사원 등	9~4
	자영	본인	자택외의 장소에서 자영업 을 하고 있는 경우	8~3
		가족 협력자	부친이 자택외의 장소에 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곳에 가족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10~5
	농업, 어업		매일 농업, 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	10~5
	채용 내정	정규직원	회사, 사업체 등의 정규직원으 로 채용 내정의 경우	6
		정규 직원 외	파트타임, 계약사원 등으 로 채용이 예정된 사람	13~8
2. 자택 내 노동	자영	본인	자택 내 자영업자	12~7
		가족 협력자	부친이 자택에서 운영하 는 사업체에 가족이 취 업하고 있는 경우	14~9
	재택근무		가계보조를 목적으로 자 택에서 근무	11, 10
3. 구직 중	구직 중		구직 등과 같이 가정보육 불 가능 사유등급이 낮은 경우	15
4. 한부모 가정 등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1개월 근로 시간 이 120시간 미만, 이상	3, 2
	양친 없음		근로 예정자(구직 중 포함)	4
5. 보호자의 출산, 질병 등	출산		양친이 사망, 행방불명 등	1
	출산		출산 후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예정자, 그 이외의 사람	4, 5
	입원		1개월 미만 입원, 이상 입원	3, 2
	통원	아동 보육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으로 통원을 요하는 경우	주 3일 미만 통원, 이상 통원	10, 6
	항상 병상		높고 일어날 수는 있으나, 항상 병상에 있는 경우	3
	심신 장애		심신 장애로 인해 아동 보 육이 곤란한 경우	3

(표 II-3-17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소 우선 순위
6. 동거친족의 간호, 간병	입원, 통원 등 간호		입원 또는 통원하고 있는 친족을 항상 옆에서 보살피 야 하는 경우	3
	주택 내 간병	항상 주택에서 환자를 간병하고 있으므로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	누워 지내는 환자 간병 그 외 환자 간병	4, 10
	심신 장애인 간병		심신 장애인 친족을 간병 하기 위해 아동을 보육하기 곤란한 경우	4
7. 취학	학생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매일 자 택 외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	4
8. 재해	재해 복구		풍수해,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가정의 재해	1
9. 기타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 가정보육이 불가 능한 긴급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고 복지 사무소장이 판단한 경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	1, 2

주: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기준표에 의거하여 보호자 한 사람당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 순위가 가장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아동의 입소 순위를 결정함.
- * 입소 아동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및 재원 아동의 형제가 새로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입소 요건이 구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을 경우,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보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배려를 하도록 함.
- * 근로자 중 정규직원 이외의 사람은, 입소 연도인 4월 1일 시점에서 동일 사업소에서 근무 연수가 2년 이상(산후, 육아휴업 기간을 포함)인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한 단위 상향 조정함(2013년 4월 1일 입소자부터 적용).
- * 세대 상황이 상기 분류표 상의 입소 우선순위를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지사무소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세대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위로 변경하도록 함.

자료: 일본 福岡市 홈페이지(www.city.fukuoka.lg.jp)(검색일: 2013년 5월)

3) 농촌 지역: 미하마 정

농촌 지역에 속하는 미하마 정(정)의 홈페이지 자료7)를 토대로 보육소 입소 우선 순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미하마 정(town.mihama.aichi.jp)

해당 지역의 적용 기준은 앞서 살펴본 도시 지역들과 비교하여 그 적용이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띤다. 즉 전반적으로 세분화 정도가 낮아 단순한 방식이 적용되나, 단 농업 종사자의 경우는 경작 면적과 가축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구직 중인 부모는 고려되지 않는 반면 출산이나 임신 중인 부모는 도시 지역에 비해 보육 수요가 높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괄된다(표 II-3-18 참조). 이외에도 만 3세아는 입소 순위 기준과 상관없이 모집 정원 한도 내에서 보육소 입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단순하고 유연한 적용 기준은 도시 지역에 비해 대기 아동 수가 많지 않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3-18〉 미하마 정의 보육소 입소 순위 기준

모친 등의 상황	형태	유의점
1. 가정 외부 근로 낮 시간 동안 가정외부에서 항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사원 파트타임 농업, 어업 자영업(자택 외)	-일반 보육시간 중 근로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며, 한 달에 16일 이상(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종사자는 1인당 경작 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논: 2反(20a·2,000평방미터) 이상 ·밭: 2反(20a·2,000평방미터) 이상 ·과수원: 2反(20a·2,000평방미터) 이상 ·시설원예: 1畝(1a·100㎡) 이상 ·가축: 소, 돼지 10마리 이상, 닭 500마리 이상
2. 자택 내 근로 낮 시간 동안 자택 내에서 아동과 떨어져서 일상적인 가사 이외의 노동을 항상 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 재택근무	
3. 어머니의 출산 등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임신 출산	출산(예정일)을 중심으로,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2개월 간, 계 5개월간 이내, 단 산후 경과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가 될 때 까지
4. 질병 등 질병, 부상 또는 정신,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	질병 장애 고령	아동을 보육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 부상, 심신 장애가 있을 경우는 보육이 곤란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고령: 만 65세 이상 (아동 입소 시)
5. 질병 등의 간병 장기간에 걸친 질병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친족을 항상 간호하고 있는 경우	간호	일반 보육시간 중 하루 4시간 이상, 한 달에 16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간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법상의 특별 장애자, 또는 위에서 명시한 바대로 간병을 요한다는 의사의 증명서

(표 II-3-18 계속)

모친 등의 상황	형태	유의점
6. 재해 풍수해, 지진, 화재 등의 복구에 종사하는 경우		지진, 풍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 해 거택을 잃고, 또는 거택을 잃지는 않았으나 파손으로 복구 중인 경우
7. 기타		앞서 제시한 사유와 유사한 상황으 로서 당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입소 시점인 4월 1일 현재(실시 아동을
확정한 후) 입소 가능, 단,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과는 보육료가 다르므로
유념해야 함.

자료: 일본 美浜町 홈페이지(town.mihama.aichi.jp)(검색일: 2013년 5월)

나. 프랑스

프랑스는 각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관련 적용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나, 주로 부모의 근로 상황과 가족의 취약 상태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부모의 근로 상황은 정규직 근로 이외에도 비전형적인 근로와 직업훈련 등이 포괄되며, 부모의 취약 상태로는 부모의 질병과 장애, 한부모, 다자녀 가구, 빈곤 가구, 쌍생아 출산, 장애 등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다. 각 지역별 구체적인 보육시설 입소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3-19>와 같다.

우선 파리 19구의 보육시설 입소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맞벌이 부부 2) 한부모 가족 3) 사회 편입 시도 중인 부모 4) 장애 아동 5) 입양 아동 6) 쌍생아 출산 7) 미숙아 출산 8)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 9) 학생 부부 10) 해당 지자체 보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자 순이다.

반면 Massy의 경우는 별도 순위나 대상별 점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단지 사회 편입 시도 중인 부모,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가족, 다자녀 가정, 구직 활동 중이거나 학생 부모 등이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Val d'Oise시와 Ile de France시에서는 한부모와 장애 아동에게 13점, 장애 부모는 그 정도에 따라 7점~13점을 부여하며, 쌍생아 출생에는 6점을 부여하는 등 대상별로 적용 점수를 일부 부여한다.

〈표 II-3-19〉 프랑스 지자체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 고려사항

지자체 명	주요 내용
Paris 19구	-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① 맞벌이 부부 ② 한부모 가족 ③ 사회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부모 ④ 장애 아동 ⑤ 입양 아동 ⑥ 쌍생아 출생 ⑦ 미숙아 출생 ⑧ 위험 상태에 처해 있는 아동 ⑨ 학생 부부 ⑩ 해당 지자체 보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Massy	- 취약가정: 사회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부모, 중앙 정부 모성 보호국(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보호 아래 있는 재정적 혹은 사회적 취약 가족, 장애 혹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의 의료진의 판단에 따름) - 다자녀가정: 쌍생아,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한부모 가족(3개월 근로 계약으로서 한번 더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류 필요) - 학생 부모(학업 기간에 대한 증명 서류 필요) -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직업을 구하고 있는 가족(3개월 근로 계약으로서 한 번 더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류 필요) - 3자녀 이상 가구로서 보육서비스를 구하지 못한 경우
Val d'Oise, Ile de France	- 가족 관련 사항 • 한부모: 조세납부 증명서, 본인 기재식 인증증서(13점) • 부모 장애 정도 80% 이상: 장애자 카드(13점) • 부모 장애 정도 80% 이하(RQTH): RQTH 증명 서류(7점) • 아동의 장애: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13점) • 부양자녀 수: 가족 수첩 혹은 출생 증명서(6세 미만 자녀 당 2점) • 쌍생아 출생: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가족 수첩, 출생증명서(6점) - 보육시설 이용 관련 사항 • 보육시설 이용 일수: 본인 기재식 인증증서(2점) • 비전형적인 근로 시간: 고용주가 발급한 증명서(13점) ※ 비전형적인 시간에 보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다른 자녀: 보육시설이 발급한 증명서(이용 보육시설 당 6점)

자료: 파리 19구 홈페이지(2012) 보육서비스 등록 방식(www.mairie19.paris.fr/mairie19), Massy(2012). Inscription en structures petite enfance à Massy, Prefecture du Val d'Oise(2012). Demand de pre-inscription en creche, Prefecture des Hauts-de-Seine, Prefecture de la Region Ile de France(2012). Demand de pre-inscription en creche. :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87 재인용.

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 적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

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적용 대상에 대해 프랑스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 비해 대기 아동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의 규정에 비해서는 정교하므로 대기 아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소 우선순위의 정교화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할 바는 각 지역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이 일부 달리 적용되어 지역 간 적용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입소 우선순위 대상을 대체로 준수한 가운데, 각 대상별로 세부 적용 기준은 지역적 여건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지역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일차적인 보호를 요하는 아동 즉 입양 아동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고, 부모의 노동권 보장 즉 구직 활동 중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조되기도 한다. 반면 장애 아동은 모든 지역에서 우선 입소 대상으로 규정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일본의 보육소 입소 우선 대상은 맞벌이 가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부모, 임신·출산 직후, 가족 간병 중인 부모, 저소득 취업한부모, 구직 활동 중 부모, 재해 가구 등이다. 또한 각 지역별 우선순위 대상을 종합하면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은 공통적으로 맞벌이 가구, 장애 부모 등 가정내 육아가 어려운 부모와 부모 부재 시나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며, 이에 대하여 저소득층 가구나 한부모가족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는 국가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다자녀 가족, 직업훈련이나 학업 중인 부모(구직 활동 중), 임신·출산 직후 부모 등이 포괄된다(표 II-3-20 참조).

〈표 II-3-20〉 일본의 보육소 입소 순위 적용 기준 지역간 비교

구분	1순위 대상	2순위 대상	3순위 대상	4순위 대상
	50점	30점	15점	
동경도 세타가와 구	-출퇴근, 자영업, 재택근로 -질병, 장애 -부모 부재 -재해 ※저소득층, 한 부모 등 가산	-구직 활동	-출산	

(표 II-3-20 계속)

구분	1순위 대상	2순위 대상	3순위 대상	4순위 대상
	20점	17점	12점	4점
동경도 시나가와 구	-출근, 자영업, -부모 부재 -질병, 장애 ※저소득층, 한 부모 등 가산	-간병, 병원 동반	-재택 -근로 내정	-구직 활동
	A~F	B~F	E	G~H
요코하마 시	-자택외 노동 -질병, 부상, 장애 -친족 간병 -재해 복구 -한부모가족 ※동일 점수인 경우 장애 부모, 한부모, 형제 동 일 입소 시 등 조정 지수 적용	-자택내 노동	통학	-출산 전후(G) -구직 중(H)
	10점	9점	8점	4~3점
센다이 시	-피고용자 -부모 부재 -질병, 장애 -시설 동반, 간병 -재해 ※저소득층, 한 부모, 장애 아 동 등 가산	-자영업자	-출산 -학업, 직업훈련	-내근(4점) -구직 활동(3점)
	1순위	2, 3순위	4, 5순위	
후쿠오카 시	-양친 없음(1) -가정보육이 불 가능한 긴급 상 황의 아동(1~2)	-재해 복구(2) -한부모가족 (2~3) -정규직(3) -자택외 자영업 (3~8) -심신 장애(3) -상시 병상(3)	-심신 장애자 간병(4) -출산(4~5)	

따라서 양국에서 보육 수요가 높아 가장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의 입소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대상은 대체로 1) 맞벌이 가구 2) 장애 부모 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며, 이외에도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면 부모의 질병, 도산이나 해고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참조하면, 현행 1순위 입소 대상자는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보육 수요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입소 대상에 적용하는 기본 기준과 더불어 저소득층 등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구분하여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적용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즉 1순위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보육 수요가 있는 항목을 가감함으로써 실제 수요가 보다 면밀하게 반영되도록 한다. 일본 사례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육아휴직 이후 복귀자의 추가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형제·자매가 동시에 보육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반면 65세 미만(또는 60세 미만) 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감점 처리된다.

그밖에도 구직 활동 중이거나 학생 부부, 질병이 있거나 임신이나 출산 직후, 가족 돌봄 중 부모 등을 입소 순위 대상자에 새롭게 포괄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상별로 면밀한 적용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 의하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대기 아동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적용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보육소 입소 기본 지수 이외에도 아동이나 가구 여건에 따른 조정 지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 기준은 부모들의 근로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질병이나 가족 간병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경우에도 주/월당 일수와 시간에 따른 세분화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일 점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적용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 지역의 경우는 적용 기준이 도시 지역에 비해 단순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 아동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일본 사례에서와 같이 우선 입소 대상자별 기본 기준과 별도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의 단계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보육 수요 관련 법률 및 제도

이 장에서는 사회적 보호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 가구 및 아동과, 기관보육 이외의 육아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보호 대상

사회적 보호 대상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범위

사회복지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및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보육서비스의 우선 적용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가적 보호로 규정되므로 보육서비스 대상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 장애, 질병, 빈곤에 처한 가구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3조).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규정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가구 또는 부모(또는 보호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질병,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인, 다문화가족, 임산부 등이며, 입양 아동과 장애 아동 역시 그 대상으로 포괄된다(동법 제2조).

〈표 III-1-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원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표 III-1-1 계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차. 「입양특례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나.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의 법적 근거**1)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또한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이 법에 근거한 수급권자 이외의 계층으로 자활급여 대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는 일차적인 사회적 보호 대상이므로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포괄될 수 있다.

〈표 III-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3(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나) 장애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6, 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에 관한 책임을 지니며,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 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등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동법 제35조) 장애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역시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현행 장애 등급은 1~6등급으로 구분 되는데, 이를테면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급여액을 차등화하고, 소득기준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적용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36조).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의 지원 대상자는 1) 임신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수 등 가구 구성 3) 소득 재산 상태로 규정된다. 이들 지원 기준들을 고려하면 장애 부모인 경우는 장애 정도를 고려하고 소득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3〉 「장애인복지법」 상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표 III-1-3 계속)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신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填)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때 부와 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즉 동법 제4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이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가출한 자를 포함한다. 이들 가족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소득 수준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 내용을 규정한다(동법 제5조).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적용 대상에 한하여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동법 제5조의 2, 보호대상자의 특례 규정에 의하면, 미혼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도 입소 우선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표 III-1-3 참조). 즉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법률에 명시된 대상 이외에도 부모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이거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 III-1-4〉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표 III-1-4 계속)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 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므로 보육서비스 제공 시에 입소 우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III-1-5〉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마) 기타

「농어촌주민의 의료보전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에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말해주므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III-1-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상 지원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표 III-1-6 계속)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보호 지원을 위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임대주택의 우선권 보호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구성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따라서 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에 직면하여 아동의 양육이 어려운 부모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표 III-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III-1-7 계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2) 대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규정된다. 또한 동법상 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기초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아동은 부모가 부재하거나, 학대 등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리고 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고려되어야 하며,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들 아동이 적극적으로 포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고(동법 제4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등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따라서 장애 아동을 둔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역시 일차적인 보육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표 III-1-8〉 「아동복지법」 상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표 III-1-8 계속)

5. "지원 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입양특례법」 제3조는 입양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입양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4조). 또한 입양 아동

에 대해 양육수당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조). 따라서 입양아동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9〉 「입양특례법」상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자료: 법제처(www.moleg.go.kr)(검색일: 2013년 5월)

2. 육아지원 우선 적용 대상

기관보육 이외의 육아지원인 가정내 보육 지원 대상과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및 지급액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내 보육 지원 대상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내 개별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된 제도이다. 동 사업은 즉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대응하기 어려우며,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용 대상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영아종일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개월 이하 영아이다. 사업 대상은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였으나, 2012년에 모든 취업부모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시간제 돌봄 지원 예산이 2012년 3만 가구에서 46,800가구로 확대되었다.

〈표 III-2-1〉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부모 질병에는 취업 증명 불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13a).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23.

한편 2013년에 지원 대상 우선순위의 구체화 및 현실화를 위해 일부 기준을 보완, 개선하였다. 기존의 저소득 한부모와 맞벌이 가구 기준 그리고 이외 적용 대상

으로 규정한 바를 1)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2) 장애 부모 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으로 명료화하였다.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의 적용 기준 및 우선순위는 <표 III-2-1>과 같다.⁸⁾

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맞벌이 부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영아 보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동 사업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1:1 개별보육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이며, 다만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누구나 만 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즉 장애아, 다문화가정, 아토피 등 질병, 어린이집 부적응 아동인 경우는 이용 가능하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 단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만 5세까지 신청 가능 · 장애아동·부모, 한부모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두 아이 이상 가정 ※ 두 아이 이상: 두 아이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 아토피, 질병,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부모가 원하는 경우 - 이용 부모 중 한명과 영유아가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자료: 경기도(2012).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안내. p. 4.

한편 연계 시 우선순위는 2명 이상의 이용 부모와 교사를 연계시켜야 할 경우에는 가정내 소득이 적거나 0세아 우선 연계 등 연령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육수당 등과 취약계층 아동 대상 수당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장려금 등 일시금과 월별 수당으로 구분된다.

8)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은 여성가족부(2013a).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24 참조.

1) 중앙정부

가)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에 다니는 아동과 다니지 않는 아동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거하여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당시에는 만 1세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5세 이하 전 계층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금액은 아동 연령과 특성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 12개월 미만아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아는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은 월 1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취학전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아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아는 월 17.7만원, 36개월 미만아는 월 15.6만원, 36개월 이상부터 48개월 미만아는 월 12.9만원, 48개월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표 III-2-3〉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2013)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0~35	200천원
24~35		24~35	156천원		
36~취학전	100천원	36~47	129천원	36~취학전	100천원
		48~취학전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 301~302.

나)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장애아를 대상으로 월 2~2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는 중증장애인(장애 등급이 1, 2급인 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과 경증장애인(장애등급 3~6등급)이다. 수당 지급액은

기초보장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경우는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경우는 1인당 월 15만원, 기초보장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인 경우는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표 III-2-4〉 장애아동수당 지원 현황(2013)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b).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 121~124.

다) 입양자녀 양육수당·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⁹⁾

입양 관련 수당은 「입양특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 및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게 지급한다.¹⁰⁾ 우선 입양 자녀 양육수당의 경우는 만 13세 미만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해당 아동이 만 13세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 경우는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¹¹⁾, 경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6등급)과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 분만 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또는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게는 2013년 기준 월 551,000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1~2급,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장애인)에게는 월 627,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수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7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미혼한부모, 최저생계

9) 보건복지부(2013c). 201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p. 41~44.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11) 단, 해당 아동이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비 150%이하) 가정의 경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8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아동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급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2013)

구분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¹²⁾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¹³⁾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서 월 15만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자료: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126.

<표 III-2-6>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지원 월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013)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 130%)	1,266,500원	1,638,410원	2,010,319원	2,382,227원	2,754,136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50%)	1,461,347원	1,890,473원	2,319,599원	2,748,723원	3,177,849원

자료: 여성가족부(2013b). 201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 3.

지금까지 살펴본 양육수당 등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정책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 <표 III-2-7>과 같다.

- 12) 지원 대상 제외 가구: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보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 13) 지원 대상 제외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 가구,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표 III-2-7〉 중앙정부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3)

제도명		지급 대상	급여액
양 육 수 당	일반	- 연령: 만 5세 이하 - 요건: 전체 가정양육 아동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취학 전: 월 10만원
	농어촌 거주 아동	- 연령: 만 5세 이하 - 요건: 농어업인 가구의 자녀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7.7만원 - 36개월 미만: 월 15.6만원 - 48개월 미만: 월 12.9만원 - 취학 전: 월 10만원
	장애 아동	- 연령: 만 5세 이하 - 요건: 장애인등록아동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취학 전: 월 10만원
장애아동 수당		- 연령: 18세 미만 등록한 장애인 (단,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 포함)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 수급 중증장애인: 월 20 만원 - 기초 수급 경증장애인: 월 10 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한부모(조손) 가족 아동양육비	- 연령: 한부모(조손)가정 12세 미만 아동 - 소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 아동 1명당 월 7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아동 1명당 월 15만원	
	- 연령: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소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 아동 1명당 월 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3세까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아동	- 아동 1명당 월 15만원
입양가정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 또 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만 18세 될 때까지, 고등학교 재 학 중일 경우 졸업시까지)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 대상: 월 551천원 - 중증장애인: 월 627천원

자료: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a), 장애인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b),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3b),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3)에서 재구성함.

2) 지방정부

2005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8개 지역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은 크게 일시금과 월 지급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두 가지 방식의 현금지원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일시금은 출생 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급여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서는 10~100만원, 셋째아부터는 20~3,000만원 선이며, 급여액 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셋째아부터는 인천 지역 등과 같이 1,0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2-8 참조). 월 지급 수당의 경우 지급 기간은 1년, 3년, 6년 등으로 다양하고, 급여액은 월 3~10만원 선이며, 장애 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경우에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표 III-2-8〉 지방자치단체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0)

구분	지원 대상	시행 지역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고
서울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강북구 외 4개구	첫째 5~20만원 둘째 10~50만원 셋째이상 50~500만원	일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강남구 외 17개구	둘째 10~100만원 셋째이상 20~3000만원	일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강서구	월 10만원 (강서구 미기재)	6년간 월별	
	여성장애인(배우자) 출산가정	관악구 외 3개구	장애 등급에 따라 150만원 이내	일시	
부산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금정구 선두구동 외 2개 동	1인당 1~10만원	일시	일부 현금 포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외 6개구(동)	둘째 5천원~60만원 셋째이상 5천원~300만원 (시비)월 10만원 1년	일시 /1년간 월별	통장 발급, 일부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금정구 외 2개 구, 동	1만원~50만원 월 10만원 1년	상동	주민자치 위원회 지원
	저소득, 쌍생아 출산 가정	사상구 외 2개구	가구당 30~50만원	일시	
인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옹진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300~1,000만원	일시	

(표 III-2-8 계속)

구분	지원 대상	시행 지역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고
인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계양구 외 8개구	셋째이상 50 또는 100만원	일시	
	여성장애인(배우자) 출산가정, 입양가정	시 외 2개구	장애 등급에 따라 300만원 이내/ 입양아 1인당 월 20만원	일시 /3년간 월별	
광주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및 동구	첫째 10~100만원 둘째 20~200만원 셋째이상 30~1,000만원	일시 (분할지급)	탄생 기쁨 축하금 현대 자동차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외 3개구	5만원~300만원 월 10만원 1년	일시 /1년간 월별	
	쌍둥이 출산가정	시 및 서구	가구당 50~100만원	일시	
대구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및 중구	둘째 20~30만원 셋째이상 50~100만원	일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단독	1인당 월 10만원 1년	1년간 월별	
	특별 지원	-	-	-	
울산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울주군	1인당 1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동구 외 2개구	1인당 10만원	일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시 및 남구	20~50만원	일시	
	특별 지원	-	-	-	
경기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이천시	1인당 1만원 포함 통장	일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과천시 외 12개시, 2개군	둘째 10~50만원 셋째이상 20~300만원 월 5~10만원 최대 24회	일시 /1~2년간 월별	일부 현금 포함 통장 발급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고양시 외 16개시	20~300만원 월 5~10만원	일시 /월별	
	여성장애인(배우자) 출산가정	김포시 외 8개시	장애 등급에 따라 150만원 이내	일시	

(표 III-2-8 계속)

구분	지원 대상	시행 지역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고
강원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고성군 외 4개시, 5개군	첫째, 둘째 10~100만원 셋째이상 10~1,000만원 월 10~20만원 1년, 3년	일시 /1~3년간 월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동해시 외 1개시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90만원 월 10만원 1년, 3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5개군	30~100만원 월 8~10만원	일시 /6년간 월별	
	여성장애인, 저소득, 이민자 출산가정	도 및 횡성군	1인당 100만원 월 3만원 6년		
충북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청원군 외 3개시	첫째 30만원 (일부 지방 첫째만 지급)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일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3개군	둘째 월 10~15만원 1년 셋째이상 15~40만원 1~2년	1~2년간 월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단양군 외 2개시	1인당 30만원 월 15~35만원	6년간 월별	
	여성장애인 출산 가정	증평군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일시	
충남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논산시 외 5개군	첫째, 둘째 30~50만원 셋째이상 80~100만원	일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부여군 외 2개시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80~100만원	일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서천군, 천안시	50~200만원	일시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천안시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일시	
전북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6개군	첫째 30~50만원 월 5~10만원 1년 둘째이상 30~200만원 월 5~10만원 3년	일시 /1~3년간 월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고창군 외 1개군, 3개시	둘째 20~100만원 셋째이상 40~2000만원	일시 또는 분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1인당 30만원	일시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군산시 외 2개군	장애 등급에 따라 50~150만원	일시	

(표 III-2-8 계속)

구분	지원 대상	시행 지역	지원 내용	지원방법	비고
전남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2개시, 13개군	첫째 10~120만원 월 10만원 2개월 2년 둘째 10~240만원 월 10~15만원 2개월~2년 셋째이상 10~1100만원 월 10~25만원 1년~27개월	일시 /2~27개월간 월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목포시 외 2개군	둘째 150만원 또는 월 3~10만원 1~4년 셋째이상 400만원 또는 월 10만원 2~4년	일시 /1~4년간 월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나주시 외 2개군, 2개시	1인당 100~300만원 월 5~30만원 23개월	일시 /23개월간 월별	
	특별 지원	-	-	-	
경북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고령군 외 7개군, 5개시	첫째 30~100만원 둘째 30~200만원 셋째이상 30~300만원 또는 전체 월 2~30만원	일시 /10개월~5년간 월별	일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경주시 외 3개군	둘째이상 30~70만원 또는 월 10~20만원 1~5년	일시 /1~5년간 월별	임신 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3개시, 1개군	1인당 60~300만원 월 10~20만원 1~2년	일시 /1~2년간 월별	
	특별 지원	-	-	-	
경남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천군 외 3개군	첫째 30~100만원 둘째 50~200만원 셋째이상 280~500만원 월 20~35만원 1~6년	일시 /1~6년간 월별	일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거창군 외 5개군, 4개시	둘째 20~100만원 월 10만원 12개월 셋째이상 50~500만원 월 10~15만원 6년	일시 /1~6년간 월별	현금 포함 통장 발급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외 5개시, 1개군	1인당 20~300만원 월 10~15만원 6년 이내	일시 /6년 이내 월별	
	쌍둥이출산가정	창녕군	신생아 1명당 30만원	일시	
제주	첫째아 이상	-	-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도 단독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일시	
	셋째아 이상	-	-	-	
	특별 지원	-	-	-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정리: 유해미(2011). 영아양육
비용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p. 43~46 재인용.

3. 소결

앞서 살펴본 보육 제공 관련 제도와 육아지원정책 현황을 토대로 어린이집 입소 순위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보호 대상 가구 및 아동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파악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나 질병,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입양 아동, 장애 아동이다. 이 때 장애 부모와 아동은 장애 등급별 차등 적용이 요구되며, 저소득층은 보육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즉 가정내 양육이 어려워 보육이 필요한 가구나 아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이에 더하여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출 부모나 경제적 상실 등 실질적으로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도 적극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와 농어촌 지역 거주 자녀의 경우는 가정내 양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란 측면에서 우선순위 적용 시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가구 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현금지원정책은 보편적 양육수당을 제외하면, 그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 아동, 입양 아동이다. 이 때 장애 아동은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의 일관성 견지를 위해 이들 대상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단 장애 부모와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정책에 의하면, 일시금 수준은 셋째아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 월 수당은 둘째 또는 셋째아부터인 지역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적용 원리에 의하면, 영유아가 2인이 가구의 입소 우선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장애 부모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장애 부모는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가구 특성으로 맞벌이 가구, 장애 부모, 저소득 한부

모가족,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가구, 영유아 2명 이상 가구), 아동 특성으로 장애, 입양, 그리고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며, 지역 특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적용이 가능하다.

IV. 가구 특성별 보육 수요

이 장에서는 가구 특성별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과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의 근로 특성을 파악하여 각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 특성별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맞벌이 부모의 근로 특성에 대해서는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1~3월)와 2012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어린이집 대상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취약계층 가구, 다문화가족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맞벌이 가구

1) 취업모 가정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제공의 주된 대상은 맞벌이 가구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제공되고 있는지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000개의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약 94%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로는 전체 4,000개 어린이집 중 91.8%가 취업모 가정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었으며, 51.3%가 취업모 가정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었다(이미화 외, 2012).

기관 유형별로 취업모 가정의 영아 보육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95.0%으로 가장 높으나, 이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도 영아 보육 비율이 88.0% 이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취업모 가정의 영아 보육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 가정의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이보다

는 낮아서, 7.2%에 불과한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대체로 72.6%~86.3%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취업모 가정의 영아, 유아 및 영유아를 보육 중인 비율이 중소도시의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이미화 외, 2012).

〈표 IV-1-1〉 취업모 가정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91.8	51.3	93.7	(4,000)	24.2	25.7	(175,873)
기관 유형							
국공립	90.8	81.9	92.4	(463)	20.1	34.6	(30,479)
사회복지법인	91.0	82.3	93.4	(326)	18.4	30.3	(22,669)
법인·단체	91.4	85.9	94.4	(336)	18.6	31.9	(20,602)
민간	88.0	72.6	91.6	(1,192)	19.5	23.9	(63,555)
가정	95.0	7.2	95.3	(1,462)	45.4	1.5	(25,476)
직장	95.0	86.3	97.0	(221)	34.1	43.0	(13,093)
소재지							
대도시	92.2	56.6	94.2	(1,480)	26.5	28.4	(68,314)
중소도시	91.4	43.6	93.2	(1,692)	24.2	24.4	(70,171)
읍·면 지역	92.1	58.8	94.2	(828)	20.0	23.2	(37,388)

주: 응답 내용은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9.

2) 보육 아동 중 취업모 가정 영유아 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비율을 시설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그 비율이 매우 높으나, 아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보육 아동 대비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비율은 5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전연령 보육 아동 중 취업모 가정의 자녀는 영아가 24.2%이고, 유아는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1 참조). 또한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대비 취업모 자녀의 비율은 영아가 49.5%, 유아는 50.2%로 유아의 비율이 영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표 IV-1-2 참조).

〈표 IV-1-2〉 전체 어린이집의 영아, 유아 및 영유아 대비 취업모 자녀 비율

단위: %			
구분	취업모 영아	취업모 유아	취업모 영유아
취업모 자녀	49.5	50.2	49.9
2009년 조사	44.8	39.7	41.7

주: 응답 내용은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79.

이는 0~2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2009년 기준 30%에 못 미치는 현실, 즉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낮은 현실과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서문희 외, 2009). 기관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취업모 가정의 영아 비율이 가장 높아서 전체 보육 아동의 45.4%이며, 직장어린이집도 근로자 자녀에 우선순위를 주는 특성상 34.1%로 기타 유형의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취업모 가정의 영아 비율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유아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43.0%, 국공립어린이집 34.6%, 법인·단체어린이집 31.9%로 대체로 「영유아보육법」상 입소 우선순위 준수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취업모 가정의 유아 보육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를 어린이집이 취업모 가정의 유아 대상 보육에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영아의 경우, 가정이나 직장과의 근접성, 취업모의 출·퇴근시의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취업모 가정의 영아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를 둔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 우선순위 규정 뿐 아니라 출·퇴근과 영아의 등·하원의 편의성이 고려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영유아 수 대비 취업모 영유아의 비율은 2009년도의 41.7%에서 2012년도에 49.9%로 증가하였다. 취업모의 영아는 2009년 44.8%에서 2012년 49.5%, 취업모 가정 유아는 2009년 39.7%에서 2012년 50.2%로 영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09년도에는 전체 영아 중 취업모 영아의 비율이 전체 유아 중 취업모 유아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2012년도에는 전체 유아 중 취업모 유아의 비율이 전체 영아 중 취업모 영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유치원 등 여타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 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유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비용 지원 확대 이외에도 여타 기관보다 이용 시간 측면에서 취업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은 여타 이용 가능한 기관이 제약되는 ‘영아’뿐 아니라 유아가 있는 취업모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취약계층 가구

1) 취약계층 가구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기관 보육서비스를 받드시 필요로 하는 대상은 취업모 가정 혹은 맞벌이 가정이라 할 수 있으나, 보육서비스는 다른 한편으로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므로 양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들 취약계층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1-3>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 아동 대비 취약계층 영유아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IV-1-3〉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4.7	19.0	26.5	(4,000)	0.8	1.4	(175,873)
기관 유형							
국공립	20.3	41.2	47.1	(463)	0.7	2.2	(30,479)
사회복지법인	22.8	37.7	43.0	(326)	0.7	1.8	(22,669)
법인·단체	25.8	42.1	49.8	(336)	0.9	1.9	(20,602)
민간	16.8	25.4	32.9	(1,192)	0.9	1.4	(63,555)
가정	9.2	0.9	9.7	(1,462)	1.2	0.2	(25,476)
직장	2.6	6.8	9.4	(221)	0.1	0.3	(13,093)
소재지							
대도시	15.8	20.7	28.3	(1,480)	0.9	1.5	(68,314)
중소도시	12.4	15.0	22.5	(1,692)	0.7	1.2	(70,171)
읍·면 지역	17.6	25.0	32.0	(828)	0.7	1.5	(37,388)

주: 응답 내용은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82.

이에 따르면 모부자 가정(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 영유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전체 응답 대상 어린이집의 26.5%에 해당 하였다. 이들 중 취약계층 영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14.7%, 취약계층 유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19.0%로 나타난다.

기관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법인·단체어린이집이 49.8%, 국공립어린이집 47.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3.0%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미화 외, 2012).

2) 보육 아동 중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수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취약계층 영아는 0.8%, 취약계층 유아는 1.4%에 해당하여 아동 수 기준으로는 전체 보육 아동 대비 비중은 미미한 수준을 나타낸다. 기관 유형별로는 보육 아동 중 취약계층 영아 비율은 가정어린이집 1.2%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0.7%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나, 취약계층 유아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재원한 아동 수 비율이 2.2%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순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재원수가 많았다(표 IV-1-4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만 3~5세 취약계층 유아에게 기관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우선 입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국공립, 법인·단체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유아의 재원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다문화가족’은 국공립, 법인·단체어린이집의 입소에 우선적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명기되어 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 등에 익숙하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동에게도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가 현재 어린이집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IV-1-4>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영아나 유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

집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53.3%이고 다문화가족의 영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42.3%, 유아를 보육 중인 어린이집은 30.5%로 나타난다.

기관 유형별로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81.9%로 이외 기관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재지별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은 68.0%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어(이미화 외, 2012)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이 이외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분포가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데 따른 결과라 하겠다.

〈표 IV-1-4〉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영유아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42.3	30.5	53.3	(4,000)	2.2	2.1	(175,873)
기관 유형							
국공립	59.1	64.8	81.9	(463)	2.0	3.1	(30,479)
사회복지법인	58.2	61.7	77.3	(326)	2.4	2.8	(22,669)
법인·단체	56.1	59.4	73.0	(336)	2.6	3.4	(20,602)
민간	48.4	42.3	64.6	(1,192)	2.2	2.0	(63,555)
가정	30.9	1.6	32.0	(1,462)	2.9	0.1	(25,476)
직장	13.3	12.8	19.9	(221)	0.3	0.4	(13,093)
소재지							
대도시	40.8	29.6	51.6	(1,480)	1.7	1.6	(68,314)
중소도시	37.3	24.2	48.0	(1,692)	1.8	1.6	(70,171)
읍·면 지역	56.2	46.0	68.0	(828)	3.7	3.9	(37,388)

주: 1) 2009년 다문화가족의 유아 수에는 방과후 영유아 39명이 포함되었음.

2) 응답 내용은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이미화 외(201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94.

2) 보육 아동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1명이라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조사 대상 어린이집 전체 보육 아동 중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는 2.2%, 유아 수는 2.1%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 기관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지역 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다문화가족 영아와 유아는 각각 1.7%와 1.6%에 불과한 데 비해 읍·면 지역 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다문화가족 영아와 유아는 각각 3.7%, 3.9%로 나타나, 지역적 격차를 보였다.

2.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과 수요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의 근로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입소순위 차등 적용의 근거를 모색하고, 준맞벌이 가구 즉 직업훈련 중인 부모를 우선 입소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가. 맞벌이 부부의 근로 특성

1)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활동참여율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37.0%이며, 모가 취업한 비율은 휴직자를 포함하여 39.5%로 나타난다. 해당 비율은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자녀가 만 2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만 2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IV-2-1〉 영유아 자녀 가구의 맞벌이 및 모 취업 비율

단위: %(명)

구분	맞벌이 여부				모 취업 여부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계(수)		취업	휴직중	무직	부재/모름	계(수)
전체	37.0	61.1	1.9	100.0(2,519)	35.4	4.1	59.7	0.9	100.0(2,518)
연령									
0세	28.1	69.7	2.2	100.0(716)	16.8	12.2	71.1	0.0	100.0(716)
1세	34.8	63.4	1.9	100.0(423)	35.0	1.4	63.1	0.5	100.0(423)
2세	41.9	56.0	2.1	100.0(339)	41.7	1.2	53.6	3.6	100.0(338)
3세	40.2	57.4	2.5	100.0(326)	44.3	0.6	54.5	0.6	100.0(325)
4세	44.0	54.7	1.3	100.0(300)	47.0	0.0	52.3	0.7	100.0(300)
5세	42.8	55.8	1.4	100.0(416)	47.6	0.5	50.7	1.2	100.0(416)
영유아 구분									
영아	33.2	64.7	2.0	100.0(1,478)	27.6	6.6	64.8	0.9	100.0(1,477)
유아	42.4	55.9	1.7	100.0(1,041)	46.4	0.5	52.4	0.8	100.0(1,041)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24 재인용.

또한 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지난 1주일간 활동을 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 비율은 약 69.8%이고, 이들 중 여성 비율은 50.9%로 나타난다.

〈표 IV-2-2〉 지난 1주간 활동 내용

단위: %, 명

구분		수	활동 내용				
			경제활동	육아/가사	취업/학업준비	기타	
전체		15,255	69.8	26.6	0.6	3.0	
성별	남자	6,671	94.2	0.2	0.7	4.8	
	여자	8,584	50.9	47.1	0.5	1.6	
연령	30~34	소계	3,566	65.0	31.7	0.7	2.6
		남자	1,426	94.8	0.1	1.1	4.1
		여자	2,140	45.1	52.9	0.5	1.5
	35~39	소계	5,195	67.1	29.6	0.6	2.7
		남자	2,319	94.6	0.3	0.9	4.3
		여자	2,876	45.0	53.2	0.5	1.4
	40~44	소계	6,494	74.7	21.3	0.5	3.5
		남자	2,926	93.5	0.3	0.5	5.7
		여자	3,568	59.2	38.6	0.5	1.7

자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2) 근로 형태

영유아를 둔 취업부의 근로 형태별 취업모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아버지의 경우는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91.6%에 달하는 반면 어머니는 76.2%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10.8%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영유아 취업부의 근로 형태별 영유아 취업모 근로 형태

단위: %(명)

구분	모 근로 형태				계	수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휴직중		
전체	76.2	10.8	2.4	10.6	100.0	(932)
부 근로 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72.6	6.9	2.1	10.0	91.6	(854)
불규칙하게 출퇴근	3.4	4.0	0.1	0.6	8.2	(76)
출퇴근하지 않음	0.1	-	0.1	-	0.2	(2)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25 재인용.

또한 맞벌이 가구 모두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72.6%로 가장 높고, 부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나 모가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6.9%로 조사된 반

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3.5%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를 세분화할 시에 성별에 따른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모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10%를 넘고, 부의 해당 비율도 8.2%로 나타나므로 맞벌이 가구의 동일 순위 발생 시에 근로 형태별로 세분화된 적용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표 IV-2-3 참조).

〈표 IV-2-4〉 주된 직장(일)의 취업 형태

단위: %, 명

구분		수	취업 형태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0,316	93.8	6.2	
성별	남자	6,116	98.4	1.6	
	여자	4,200	87.1	12.9	
연령	30~34	소계	3,197	95.7	4.3
		남자	1,892	98.6	1.4
		여자	1,305	91.4	8.6
	35~39	소계	3,346	93.3	6.7
		남자	2,056	98.5	1.5
		여자	1,290	85.0	15.0
	40~44	소계	3,773	92.6	7.4
		남자	2,168	98.0	2.0
		여자	1,605	85.2	1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 재분석.

<표 IV-2-4>에서 주된 직장(일)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남성은 98.4%, 여성은 87.1%로 나타나며, 여성의 시간제 노동 비율은 전체 평균이 12.9%이나, 35세 이상에서 더욱 증가하여 15.0%와 14.8%를 나타낸다. 이는 여성의 시간제 노동 비율을 고려하여 주당 근로 시간에 따른 세분화된 입소 순위 적용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는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표 IV-2-5>의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전일제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전일제의 경우 부는 96.3%이나 모는 85.4%로 상대적으로 낮고, 부와 모가 동시에 전일제인 경우는 83.4%로 나타난다. 모의 경우는 시간제 노동의 비율이 10%를 육박하므로 시간제 노동을 하는 부모를 어린이집 입소 시에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2-5〉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전일제 여부

단위: %(명)

구분	모 전일제 여부			계	수
	전일제	시간제	경우에 따라 다름		
전체	85.4	10.8	3.8	100.0	(295)
부 전일제 여부					
전일제	83.4	10.5	2.4	96.3	(284)
시간제	1.0	0.3	-	1.4	(4)
경우에 따라 다름	1.0	-	1.4	2.4	(7)

주: 육아휴직자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29.

〈표 IV-2-6〉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단위: %(명)

구분	모 근로 형태				계	수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출퇴근하지 않음	휴직중		
전체	69.7	8.5	2.4	19.3	100.0	(492)
부 근로 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66.5	6.5	2.0	18.1	93.1	(458)
불규칙하게 출퇴근	3.3	2.0	0.2	1.2	6.7	(33)
출퇴근하지 않음	-	-	0.2	-	0.2	(1)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27 재인용.

또한 <표 IV-2-6>에서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부의 경우는 93.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모의 경우 69.7%에 불과하며, 부와 모가 동시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66.5%로 나타난다. 이는 월별 근로 일수 등을 고려한 입소 적용 세부 기준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3)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

가) 근로 시간

영유아를 둔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평소 근로 시간을 분석한 결과, 15시간 미만 1.0%, 15시간~30시간 미만 3.1%, 30~40시간 미만이 4.0%로 나타나며, 40시간 이상이 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모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35세~39세 81.8%, 40세~44세 81.5%를 나타낸다. 이는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

에 감소할 수 있으므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적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표 IV-2-7〉 주당 근로 시간(평균)

단위: %, 명, 시간

구분	수	평소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10,316	1.0	3.1	4.0	92.0	42.4		
성별	남자	6,116	0.2	0.9	1.4	97.5	43.8	
	여자	4,200	2.0	6.3	7.7	83.9	40.3	
연령	소계	3,197	0.6	2.1	2.9	94.4	42.5	
	30~34	남자	1,892	0.3	0.6	1.1	98.0	43.6
		여자	1,305	1.1	4.1	5.7	89.0	40.8
	소계	3,346	1.3	3.1	4.1	91.5	42.4	
	35~39	남자	2,056	0.1	0.9	1.4	97.6	44.2
		여자	1,290	3.2	6.7	8.4	81.8	39.5
	소계	3,773	1.0	4.0	4.7	90.3	42.2	
	40~44	남자	2,168	0.3	1.2	1.7	96.8	43.5
		여자	1,605	1.9	7.7	8.9	81.5	4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 재분석.

지난 1주일 동안 총 근로 시간은 30시간 미만이 8%, 30~40시간 미만 14.8%이며, 40시간 이상이 7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당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할 경우 15시간 미만부터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IV-2-8〉 주당 총 근로 시간(지난 1주일 기준)

단위: %, 명, 시간

구분	수	총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10,521	1.9	6.1	14.8	77.2	44.45		
성별	남자	6,235	0.5	3.0	11.6	84.9	47.25	
	여자	4,286	4.1	10.7	19.3	65.9	40.39	
연령	소계	2,236	2.0	5.4	13.8	78.8	44.45	
	30~34	남자	1,345	0.4	2.7	10.8	86.2	47.60
		여자	891	4.5	9.4	18.4	67.7	39.71
	소계	3,474	2.0	6.1	14.6	77.3	44.42	
	35~39	남자	2,176	0.6	2.8	11.5	85.2	47.42
		여자	1,298	4.5	11.7	19.7	64.0	39.39

(표 IV-2-8 계속)

구분	수	총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소계	4,811	1.8	6.5	15.3	76.3	44.48
연령 40~44 남자	2,714	0.5	3.4	12.2	83.9	46.93
여자	2,097	3.6	10.6	19.4	66.4	41.30

자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한편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주업 시간과 부업 시간을 살펴보면, 주업 시간은 30시간 미만이 8.3%를 차지하여 앞서 살펴본 전체 시간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해당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높게 나타나서 연령대별로 각각 14.0%, 16.6%, 14.7%를 나타낸다. 이는 여성 근로자를 고려하여 주당 근로 시간의 세분화 적용 시 15시간 미만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2-9〉 주당 주업 시간(지난 1주일 기준)

단위: %, 명, 시간

구분		수	주업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10,521	2.0	6.3	14.8	76.9	44.32	
성별	남자	6,235	0.5	3.1	11.7	84.7	47.14	
	여자	4,286	4.2	11.0	19.2	65.6	40.22	
연령	30~34	소계	2,236	2.0	5.4	13.8	78.8	44.40
		남자	1,345	0.4	2.7	10.8	86.2	47.59
		여자	891	4.5	9.5	18.3	67.7	39.58
	35~39	소계	3,474	2.1	6.3	14.6	77.1	44.26
		남자	2,176	0.6	2.9	11.6	85.0	47.25
		여자	1,298	4.7	11.9	19.6	63.8	39.25
	40~44	소계	4,811	1.9	6.7	15.4	76.0	44.33
		남자	2,714	0.5	3.5	12.3	83.8	46.84
		여자	2,097	3.7	11.0	19.5	65.9	41.09

자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반면 주당 부업 시간은 15시간 미만이 99.6%로 대다수를 이루고 해당 비율은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당 근로 시간을 고려할 경우 주업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10〉 주당 부업 시간(지난 1주일 기준)

단위: %, 명, 시간

구분	수	부업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15~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10,521	99.6	0.3	0.0	0.0	0.13
성별	남자	6,235	99.7	0.2	0.0	0.10
	여자	4,286	99.5	0.5	0.0	0.17
연령	소계	2,236	99.8	0.2	0.0	0.06
	30~34					
	남자	1,345	100.0	0.0	0.0	0.01
	여자	891	99.6	0.4	0.0	0.13
	소계	3,474	99.5	0.4	0.0	0.16
	35~39					
	남자	2,176	99.5	0.4	0.0	0.17
	여자	1,298	99.5	0.5	0.0	0.14
	소계	4,811	99.6	0.4	0.0	0.15
	40~44					
	남자	2,714	99.7	0.2	0.0	0.10
	여자	2,097	99.4	0.6	0.0	0.21

자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모의 근로 형태별로 주당 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우선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66.8%이고,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해당 비율은 74.5%로 나타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 적용시 세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이외에 월 근로 일수 등을 고려하거나 주당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IV-2-11〉 모의 근로 형태별 주당 근로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5시간 미만	15~30 시간	30~40 시간	40~45 시간	45~50 시간	5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9	15.5	13.9	37.4	15.3	14.1	100.0(455)	38.5
규칙적으로 출퇴근	0.8	11.4	13.3	42.2	17.2	15.1	100.0(397)	40.6
불규칙하게 출퇴근	24.0	34.0	22.0	10.0	4.0	6.0	100.0(43)	24.8
출퇴근하지않음	16.7	66.7	-	-	-	16.7	100.0(15)	28.4

주: 육아휴직자 제외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56 재인용.

나) 근로 일수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근로 일수를 살펴보면 3일 이하 4.0%, 4일 1.7%를

차지하며, 5일 이상이 94.3%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당 근로 일수의 적용은 3일 이하부터 고려할만 한다.

〈표 IV-2-12〉 영아 맞벌이 가구의 주당 근로 일수

단위: %(명)

구분	모 주당 근로 일수					계	수
	3일 이하	4일	5일	6일	7일		
전체	4.0	1.7	70.8	15.8	7.7	100.0	(298)
부 주당 근로 일수							
3일 이하	-	-	0.7	1.0	-	1.7	(5)
4일	-	-	1.3	0.3	-	1.7	(5)
5일	2.3	0.3	41.3	4.4	1.3	49.7	(148)
6일	1.7	1.0	21.8	9.4	0.3	34.2	(102)
7일	-	0.3	5.7	0.7	6.0	12.8	(38)

주: 육아휴직자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28.

4)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 장소

가) 근로계약 기간

영유아를 둔 부모로 추정되는 조사대상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26%에 불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적 간소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 입증은 1년 단위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13〉 근로계약 기간

단위: %, 명

구분	수	고용시 근로기간							미정 (정년 포함)
		1개월 미만	1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 2년 이하	2년~ 3년 이하	3년 초과	
전체	8,577	0.4	0.7	1.5	5.7	0.7	0.4	0.6	89.9
성별	남자	4,962	0.3	0.2	0.5	4.3	0.5	0.5	93.0
	여자	3,615	0.5	1.5	3.0	7.7	0.8	0.4	85.6
연령	소계	2,041	0.3	0.5	1.0	6.1	1.1	0.7	89.5
	30~34 남자	1,170	0.3	0.4	0.3	5.7	0.9	0.8	90.9
	30~34 여자	871	0.3	0.6	1.8	6.7	1.4	0.7	87.6
	소계	2,840	0.1	0.8	1.5	5.7	0.6	0.4	90.3
	35~39 남자	1,758	0.2	0.1	0.7	4.6	0.7	0.3	92.8
	35~39 여자	1,082	0.1	2.0	2.9	7.5	0.6	0.4	86.1

(표 IV-2-13 계속)

		구분	수	고용시 근로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 2년 이하	2년~ 3년 이하	3년 초과	미정 (정년 포함)
연령	40~44	소계	3,696	0.6	0.8	1.9	5.5	0.4	0.3	0.6	89.9
		남자	2,034	0.5	0.1	0.4	3.2	0.2	0.4	0.7	94.4
		여자	1,662	0.8	1.6	3.7	8.4	0.7	0.2	0.4	84.3

자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그러나 지난 1주일간 계약 기간의 반복, 갱신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5%에 달하므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입증 확인이 요구되는 시기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V-2-14〉 현재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지난 1주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수	현재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여부		
			예	아니오	
전체		1,223	61.5	38.5	
성별	남자	531	64.2	35.8	
	여자	692	59.4	40.6	
연령	30~34	소계	362	60.5	39.5
		남자	181	64.1	35.9
		여자	181	56.9	43.1
	35~39	소계	416	60.3	39.7
		남자	188	64.9	35.1
		여자	228	56.6	43.4
	40~44	소계	445	63.4	36.6
		남자	162	63.6	36.4
		여자	283	63.3	3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 재분석.

나) 근로 장소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에 재택근무는 자택외 근무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요구된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주된 근로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일한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해당 비율은 35세 이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근로 장소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 기준의 마련은 신중을 요한다.

〈표 IV-2-15〉 주된 근로 장소(지난 주 기준)

단위: %, 명

구분		수	근로 장소	
			가정에서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전체		10,316	0.4	99.6
성별	남자	6,116	0.0	100.0
	여자	4,200	1.0	99.0
연령	30~34	소계	0.2	99.8
		남자	0.1	99.9
		여자	0.4	99.6
	35~39	소계	0.7	99.3
		남자	0.0	100.0
		여자	1.7	98.3
	40~44	소계	0.4	99.6
		남자	0.0	100.0
		여자	0.9	9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2년 8월) 재분석.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자기 집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채택근무자에 대한 별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2-16〉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근로 장소

단위: %(명)

구분	모 근로 장소					계	수
	5인이상	5인미만	자영업 장소	자기 집	다른 사람 집		
전체	66.2	13.9	10.1	6.4	3.4	100.0	(296)
부 근로 장소							
5인 이상 사업장	55.7	10.1	2.0	2.7	1.4	72.0	(213)
5인 미만 사업장	5.1	1.4	0.3	1.7	-	8.4	(25)
자영업 장소	4.4	2.0	7.8	1.0	0.3	15.5	(46)
자기 집	-	-	-	0.7	-	0.7	(2)
다른 사람의 집	0.7	0.3	-	-	1.7	2.7	(8)
기타	0.3	-	-	0.3	-	0.7	(2)

주: 육아휴직자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 서문희 외(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p. 30.

나. ‘준맞벌이’ 가구 적용 직업훈련 기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맞벌이)에 준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서 부모 중 1인 혹은 2인 모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중’인 경우를 ‘준맞벌이’로 규정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호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현재 취학이나 직업훈련 중이 아닌 ‘구직중’인 경우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취업중이 아니라하더라도 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미래의 ‘잠재적인 취업자’일 수 있고,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맞벌이에 준하는 ‘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 중’인 경우 일정 부분 낮 시간 외출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요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 직업훈련 중인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의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중’의 인정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준맞벌이 인정 직업훈련프로그램과 훈련 시간 기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직업훈련’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목적보다는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오락의 목적을 지닐 수 있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정한 의미의 직업훈련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준맞벌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단지 개인의 취미나 오락 활동의 성격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한하여 ‘준맞벌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위해 선정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고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이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시사 및 일반 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

정'으로,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계좌적합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¹⁴⁾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10.7.6)'에 따라 산재되어 있던 직업훈련도 통합관리가 추진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크게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훈련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및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의 두 가지로 통합되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하여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훈련 자비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2: 5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¹⁵⁾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훈련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이며, 내일배움카드 계좌 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 분야와 훈련시간은 다음 <표 IV-2-17>과 같다.

<표 IV-2-17>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훈련 분야 및 시간

단위: 시간

훈련 분야	총 훈련 시간	일평균 훈련 시간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 디자이너, 비서, 기타사무원, 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디자이너, 이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동물미용사,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종사원, 중식조리사, 바텐더(조주사), 식당서비스관련 종사자, 제과제빵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공통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운전 및 운송관련직, 건설관련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섬유 및 의복관련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종사자	40~240	2~8

자료: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검색일: 2013년 5월)

14)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4조.

15) 일반 지원 대상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중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는 참여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함(www.hrd.go.kr).

이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 직업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선택 가능한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대체로 40~240시간, 일 평균 훈련 시간은 2~8시간 범위에 있어, 직업훈련 중인 경우에도 훈련 참여 시간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 부여 여부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훈련은 일 평균 2~4시간 범위에 있는데, ‘직업훈련 중’은 ‘준맞벌이’에 해당하는 입소 우선순위 사항이므로 현재 취업한 상태로 보육서비스의 절대 수요자인 ‘맞벌이’의 판정 기준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현재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할 것을 요구하므로(보건복지부, 2013a: 75) ‘준맞벌이’기준인 ‘직업훈련중’인 부모의 훈련 시간은 훈련 기간 중 주당 40시간(일평균 8시간) 이상, 20일 이상이어야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세분화되고 완화된다면 ‘준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직업훈련 시간도 이에 연동하여 세분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훈련이 일평균 2~4시간 범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맞벌이 가구’ 기준이 되는 일 8시간 대비 해당 시간의 비율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조정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단위 기간 출석률에 의해 실제 훈련참가 시간이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2-18〉 훈련비 지원 현황(2013)

지원 대상	지원 금액(단위 기간 기준)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비에서 자비 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단위 기간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훈련비에서 단위 기간 자비 부담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 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자료: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검색일: 2013년 5월)

2) 직업훈련의 증빙 자료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이용해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 제공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수강 신청을 하여 ‘훈련등

록'을 하게 되므로 '훈련등록증' 등의 서류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직업훈련 과정은 최소 10일 이상 수개월 이내 단기간으로 운영되므로, 주당 40시간 이상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출석 점검이 필요하며, 훈련 과정이 종료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의 아동의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히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에 의하면,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특히 영아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이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반면에 취약계층의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도 높게 나타나므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에 의하면, 현행 맞벌이 가구 기준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 적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출근하거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재택근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포괄하여 실제 보육 수요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주당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 분포에 의하면, 근로 일수는 주당 3일,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적용하

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택근무자의 우선순위 적용 방안의 마련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준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맞벌이 가구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당 40시간(일 평균 8시간), 월 20일을 최대 기준으로 하여 이하 적용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외에도 직업훈련과정이 대체로 최소 10일 이상으로 단기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 증빙 기간을 마련하고, 출석 여부 확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이 장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와, 특히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 차등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과 대기 현황 전반을 파악하였다.

1. 가구 특성별 대기 현황

응답 가구의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대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여부

1) 어린이집 이용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중인 비율은 전체의 55.1%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아 59.7%로 조사되었다.

〈표 V-1-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지역 규모별

구분	이용 중	이용 안함	단위: %(명)
			계(수)
전체	55.1	44.9	100.0(1,000)
대도시	54.5	45.5	100.0(655)
중소도시	55.4	44.6	100.0(278)
읍·면 지역	59.7	40.3	100.0(67)

한편 각 대상별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입양된 영유아는 전체 해당 대상 중 85.7%로 응답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7.1%, 차상위계층 자녀 71.4%, 맞벌이 가구 자녀의 경우 6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부모와 질환이 있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62.5%, 58.3%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돌봄 중인 부모는 47.1%, 직업훈련/학업 중인 부모 자녀의 경우도 5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출산전후 6개월 부모의 자녀는 가장 낮은 21.6%를 나타냈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고, 보육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출산전후 부모, 가정내 간병 중인 부모, 그리고 직업훈련/학업 중인 부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이들의 입소순위 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1-2〉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구 특성별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율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76.0	100.0(2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7.1	100.0(35)
차상위계층 자녀	71.4	100.0(56)
장애 부모 자녀	62.5	100.0(3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57.1	100.0(21)
맞벌이 가구 자녀	68.2	100.0(368)
다문화가족 영유아	56.0	100.0(50)
3자녀 이상 가구	57.4	100.0(115)
조손가족 영유아	57.9	100.0(19)
입양된 영유아	85.7	100.0(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58.3	100.0(12)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50.0	100.0(38)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21.6	100.0(97)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47.1	100.0(17)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54.3	100.0(350)

2) 어린이집 이용 자녀 연령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용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세아가 2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세 19.8%, 0~1세 18.5%, 4세 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의 경우 3세아와 5세아의 이용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각각 35%와 25%를 나타냈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0~1세아의 이용률이 평균에

비해 높은 19.3%였다.

〈표 V-1-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령-지역 규모별

단위: %, 세(명)

구분	0~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8.5	28.1	19.8	18.3	15.2	2.6	100.0(551)
대도시	19.3	27.2	21.0	16.8	15.7	2.9	100.0(357)
중소도시	18.2	28.6	18.8	22.7	11.7	2.8	100.0(154)
읍면 지역	12.5	35.0	12.5	15.0	25.0	3.1	100.0(40)

한편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0~1세아의 경우는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가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5.0%,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21.6%, 맞벌이 가구 자녀 2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구의 경우 어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육 수요를 말해주는 것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 시에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표 V-1-4〉 어린이집 이용 자녀 연령-가구 특성별

단위: %, 세(명)

	0~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평균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10.5	21.1	21.1	15.8	31.6	3.5	100.0(19)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4	14.8	22.2	22.2	33.3	3.6	100.0(27)
차상위계층 자녀	5.0	22.5	32.5	22.5	17.5	3.3	100.0(40)
장애 부모 자녀	10.0	20.0	15.0	30.0	25.0	3.5	100.0(18)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5.0	25.0	41.7	8.3	0.0	2.3	100.0(12)
맞벌이 가구 자녀	20.7	28.3	19.1	16.7	15.1	2.8	100.0(245)
다문화가족 영유아	17.9	21.4	28.6	21.4	10.7	2.9	100.0(27)
3자녀 이상 가구	15.2	25.8	21.2	16.7	21.2	3.1	100.0(64)
조손가족 영유아	27.3	9.1	18.2	27.3	18.2	3.1	100.0(11)
입양된 영유아	16.7	16.7	50.0	16.7	0.0	2.7	100.0(6)
질환 있는 부모 자녀	14.3	0.0	42.9	14.3	28.6	3.4	100.0(7)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10.5	15.8	31.6	26.3	15.8	3.2	100.0(19)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38.1	19.0	38.1	4.8	0.0	2.0	100.0(21)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0.0	0.0	62.5	25.0	12.5	3.5	100.0(7)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21.6	36.8	18.9	11.6	11.1	2.6	100.0(188)

또한 이용 아동의 평균 연령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6세, 기초생활수급자 3.5세, 장애 부모 자녀 3.5세, 차상위계층 자녀 3.3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비교적 낮은 나이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상된다(표 V-1-4 참조).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응답자에 한하여 해당 어린이집 유형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조손가족 영유아가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 27.8%, 차상위계층 2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22.2%,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2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 중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들 기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 적용 노력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표 V-1-5〉 이용 중인 기관 유형

단위: %(명)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단체	등	직장	사회 복지 법인	부모 협동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68.4	10.5	10.5	0.0	5.3	0.0	5.3	100.0(19)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0.4	7.4	18.5	3.7	0.0	0.0	0.0	100.0(27)	
차상위계층 자녀	55.0	12.5	22.5	2.5	0.0	.0	2.5	100.0(40)	
장애 부모 자녀	50.0	11.1	22.2	0.0	5.6	11.1	0.0	100.0(18)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58.3	16.7	8.3	0.0	16.7	0.0	0.0	100.0(12)	
맞벌이 가구 자녀	45.3	22.4	23.3	4.5	2.4	1.6	0.4	100.0(245)	
다문화가족 영유아	63.0	14.8	14.8	0.0	3.7	3.7	0.0	100.0(27)	
3자녀 이상 가구	53.1	10.9	28.1	1.6	1.6	3.1	1.6	100.0(64)	
조손가족 영유아	45.5	9.1	36.4	9.1	0.0	0.0	0.0	100.0(11)	
입양된 영유아	83.3	16.7	0.0	0.0	0.0	0.0	0.0	100.0(6)	
질환 있는 부모 자녀	71.4	0.0	14.3	0.0	0.0	14.3	0.0	100.0(7)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63.2	21.1	15.8	0.0	0.0	0.0	0.0	100.0(19)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42.9	42.9	14.3	0.0	0.0	0.0	0.0	100.0(21)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100.0	0.0	0.0	0.0	0.0	0.0	0.0	100.0(7)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51.6	21.8	18.1	2.7	2.1	2.7	1.1	100.0(188)	

나. 어린이집 대기 현황

1) 대기 현황 전반

영유아가 있는 응답 사례 중 현재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여 대기한 경험 여부와 신청 시 대기 기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V-1-6>에 따르면 전체 1,000사례 중 65.4%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가 74.7%로 입소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9.6%, 읍·면 지역 40.3%로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한 비율은 지역규모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표 V-1-6〉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여부/대기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신청 여부		대기 기간					
	신청함	수	대기 안함	1~3개월	4~6개월	6개월 초과	평균	수
전체(수)	65.4	(1,000)	30.1	28.3	17.3	24.3	5.1	(452)
대도시	74.7	(655)	25.5	24.2	19.1	31.2	6.2 ^a	(330)
중소도시	49.6	(278)	43.3	37.1	13.4	6.2	2.4 ^b	(97)
읍면 지역	40.3	(67)	40.0	48.0	8.0	4.0	1.7 ^b	(25)
$\chi^2(df)/F$	73.971***		15.13***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 기관수를 늘리는 경향도 있다고 추측된다.

2) 설립 유형별 대기 현황

입소 대기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입소 대기 신청한 각 유형의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았다. <표 V-1-8>에 따르면 입소 대기 신청 경험이 있는 654 사례가 가장 많이 대기 신청을 하였던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68.3%였고, 민간어린이집은 62.8%로 나타났다.

<표 V-1-8> 지역 규모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 유형(중복응답)

구분	기관 유형						수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관 유형 모름	기타	
전체	68.3	62.8	28.3	2.8	1.5	0.5	(654)
대도시	76.5	64.2	30.1	3.3	1.4	0.6	(489)
중소도시	42.8	57.2	26.1	0.7	1.4	0.0	(138)
읍면 지역	51.9	66.7	7.4	3.7	3.7	0.0	(27)

지역규모별 각 기관 유형별로 대기 신청 경험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대기 비율은 대도시는 76.5%에 달하나 중소도시는 42.8%로 약 30% 이상 격차가 나타나고 대도시에서는 대기 신청 경험이 있는 4사례 중 3사례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여준다. 민간어린이집 대기 경험은 읍·면 지역에서 66.7%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57.2%로 가장 낮는데, 그 격차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대기 경험이 비슷한 수준으로 25~30% 수준이나 읍·면 지역의 대기 경험은 7.1%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관 유형별 대기 경험 비율은 기관에 대한 선호와 함께 주변의 각 유형별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수를 살펴보았다. <표 V-1-9>에 따르면 먼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경험이 있는 447사례 중 1개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55.7%에 해당하나 대도시 지역은 52.4%인 반면 읍·면 지역은 78.6%이며, 3개 이상의 국공립·법

인어린이집에 대기한 경우는 대도시 지역은 25.1%에 달하고 읍·면 지역은 7.1%로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거주 사례에 비해 다수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1.9개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읍·면 지역은 1.4개 기관에, 대도시 지역에서는 2개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9〉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 수

단위:%, 개(명)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평균	수
국공립 /법인	대도시	52.4	22.5	25.1	1.98	(374)
	중소도시	71.2	15.3	13.6	1.49	(59)
	읍·면 지역	78.6	14.3	7.1	1.36	(14)
	전체	55.7	21.3	23.0	1.90	(447)
민간	대도시	46.8	21.7	31.5	2.53	(314)
	중소도시	45.6	29.1	25.3	2.00	(79)
	읍·면 지역	55.6	33.3	11.1	1.56	(18)
	전체	47.0	23.6	29.4	2.38	(411)
가정	대도시	49.0	20.4	30.6	2.80	(147)
	중소도시	61.1	19.4	19.4	1.83	(36)
	읍·면 지역	100.0	0.0	0.0	1.00	(2)
	전체	51.9	20.0	28.1	2.59	(185)
직장	대도시	81.3	6.3	12.5	1.31	(16)
	중소도시	100.0	0.0	0.0	1.00	(1)
	읍·면 지역	100.0	0.0	0.0	1.00	(1)
	전체	83.3	5.6	11.1	1.28	(18)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411사례는 평균 2.4개의 민간어린이집에 대기하였으며, 이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아 평균 2.5개로 나타난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3개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에 대기하였다는 비율이 31.5%에 달하나 읍·면 지역은 11.1%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에 대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한 185사례는 평균 2.6개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고 이 또한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하는 경향을 보여 평균 2.8개 기관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사례에 불과한 읍·면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대기 사례를 제외하면, 1개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수가 중소도시는 61.1%이나 대도시는 49.0%로 대도시의 비율이 더 낮고, 3개 이상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한 비율이 대도시는 30.6%, 중소도시는 19.4%로 대도시의

비율이 높아서,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도시에 비해 다수의 가정어린이집에 대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 가구 특성별 대기 현황

각 가구 특성별로 현재 어린이집 대기 신청 증인지를 분석한 결과, 100% 대기 중이라고 응답한 입양된 영유아의 경우(7사례)를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의 대기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75.3%로 나타나서 이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 부모의 해당 비율은 68.8%, 질환 있는 부모 자녀는 66.7%로 높게 나타나서 이들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와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 신청 비율을 보였다(표 V-1-10 참조).

〈표 V-1-10〉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여부

단위: %(명)

구분	신청 비율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64.0	100.0(2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68.6	100.0(35)
차상위계층 자녀	66.1	100.0(56)
장애 부모 자녀	68.8	100.0(3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71.4	100.0(21)
맞벌이 가구 자녀	75.3	100.0(368)
다문화가족 영유아	62.0	100.0(50)
3자녀 이상 가구	58.3	100.0(115)
조손가족 영유아	73.7	100.0(19)
입양된 영유아	100.0	100.0(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66.7	100.0(12)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55.3	100.0(38)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50.5	100.0(97)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58.8	100.0(17)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64.0	100.0(350)

다음으로 대기 신청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기 기간을 질문하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응답자인 경우는 현재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 기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6개월 초과인 비율은 질환 있는 부모 자녀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자녀 29.0%, 맞벌이 가구 자녀 28.6%,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28.6%,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기간은 질환 있는 부모 자녀가 9.8개월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6.2개월, 3자녀 이상 가구 6.0개월, 차상위계층 자녀와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5.7개월, 맞벌이 가구 자녀 5.6개월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질환 있는 부모 자녀와 맞벌이 가구 자녀의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등의 우선 입소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V-1-11〉 현재 이용 어린이집 총 대기 기간-가구 특성별

단위: %, 개월(명)

	대기안함	1~3개월	4~6개월	6개월 초과	평균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6.7	66.7	20.0	6.7	3.00	100.0(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1.6	26.3	21.1	21.1	4.89	100.0(19)
차상위계층 자녀	32.3	29.0	9.7	29.0	5.74	100.0(31)
장애 부모 자녀	26.3	36.8	26.3	10.5	3.53	100.0(19)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3.1	30.8	23.1	23.1	6.15	100.0(13)
맞벌이 가구 자녀	32.4	24.8	14.3	28.6	5.60	100.0(210)
다문화가족 영유아	34.6	34.6	19.2	11.5	3.77	100.0(26)
3자녀 이상 가구	23.1	32.7	23.1	21.2	6.02	100.0(52)
조손가족 영유아	36.4	36.4	18.2	9.1	2.36	100.0(11)
입양된 영유아	28.6	14.3	42.9	14.3	4.43	100.0(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16.7	16.7	33.3	33.3	9.83	100.0(6)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14.3	42.9	14.3	28.6	5.43	100.0(14)
출산 전후 부모 자녀	19.0	42.9	19.0	19.0	5.05	100.0(21)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33.3	33.3	11.1	22.2	3.78	100.0(9)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1.8	26.5	15.9	25.8	5.67	100.0(151)

한편 각 가구 특성별로 어린이집 대기 신청 중이라고 응답한 조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청 총 기관수를 조사하였다. 평균 기관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로 총 4.7개소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가 4.1개소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경우가 3.5개소,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가 3.2개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환 있는 부모 자녀와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수요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며,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 수요를 지니므로 이들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표 V-1-12〉 가구 특성별 입소 대기 신청 총 어린이집 수

단위: %, 개(명)

	1개	2개	3개	4개 이상	평균	계(수)
기초생활수급자	43.8	12.5	18.8	25.0	2.50	100.0(16)
차상위계층 자녀	40.5	18.9	27.0	13.5	3.16	100.0(37)
장애 부모 자녀	36.4	36.4	18.2	9.1	2.05	100.0(2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46.7	6.7	26.7	20.0	2.27	100.0(15)
맞벌이 가구 자녀	22.7	21.3	21.7	34.3	4.10	100.0(277)
다문화가족 영유아	19.4	22.6	38.7	19.4	2.90	100.0(31)
3자녀 이상 가구	37.3	23.9	17.9	20.9	2.64	100.0(67)
조손가족 영유아	14.3	21.4	42.9	21.4	2.86	100.0(14)
입양된 영유아	14.3	14.3	28.6	42.9	3.14	100.0(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50.0	12.5	25.0	12.5	2.13	100.0(8)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28.6	9.5	19.0	42.9	3.48	100.0(21)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28.6	22.4	24.5	24.5	3.04	100.0(49)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20.0	0.0	40.0	40.0	4.70	100.0(10)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24.6	19.6	26.3	29.5	3.21	100.0(224)

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부여 시에 각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대상별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부모 자녀가 6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질환 있는 부모 자녀 59.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58.8%,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51.8%로 절반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입양된 영유아 13.1%, 다문화가족 영유아 18.4%,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19.4%,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20.6%, 차상위계층 자녀 28.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V-2-1참조).

〈표 V-2-1〉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인식

단위:%,점(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수
기초생활수급자	2.6	4.6	20.4	26.8	45.6	4.08	(1,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3	2.4	13.2	24.3	58.8	4.37	(1,000)

(표 V-2-1 계속)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평균	수
차상위계층 자녀	6.0	8.1	27.2	30.3	28.4	3.67	(1,000)
장애 부모 자녀	1.5	1.7	7.8	20.8	68.2	4.53	(1,000)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1	3.7	18.9	23.5	51.8	4.19	(1,000)
맞벌이 가구 자녀	3.4	5.0	20.7	26.7	44.2	4.03	(1,000)
다문화가족 영유아	6.4	9.8	37.6	27.8	18.4	3.42	(1,000)
3자녀 이상 가구	3.2	5.8	29.6	29.7	31.7	3.81	(1,000)
조손가족 영유아	1.9	5.1	22.6	29.1	41.3	4.03	(1,000)
입양된 영유아	9.8	13.8	45.9	17.4	13.1	3.10	(1,000)
질환 있는 부모 자녀	1.4	2.6	11.3	24.9	59.8	4.39	(1,000)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5.5	10.0	39.1	26.0	19.4	3.44	(1,000)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5.6	8.8	33.4	24.5	27.7	3.60	(1,000)
가족 돌봄 부모 자녀	2.6	5.1	21.3	26.7	44.3	4.05	(1,000)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7	9.7	36.8	29.2	20.6	3.53	(1,000)

주: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대체로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또한 기관 입소 우선 자격의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장애 부모 자녀가 4.5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질환 있는 부모 자녀 4.39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4.37점,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4.19점, 기초생활수급자 4.08점,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는 4.05점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 자녀의 경우는 이들보다 낮은 4.03점으로 조손가족 영유아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해당 평균 점수가 3.5점 이하인 경우는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3.44점), 다문화가족 영유아(3.42점), 입양된 영유아(3.10점)로 조사되었다.

〈표 V-2-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필요도-평균 점수 분포

평균 점수	해당 대상(평균 점수)
4.5 이상	- 장애 부모 자녀(4.53)
4.3 이상	- 질환 있는 부모 자녀(4.39)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4.37)
4.0 이상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4.19) - 기초생활수급자(4.08) -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4.05) - 맞벌이 가구 자녀(4.03), 조손가족 영유아(4.03)
3.8 이상	- 3자녀 이상 가구(3.81) - 차상위계층 자녀(3.67)

(표 V-2-2 계속)

평균 점수	해당 대상(평균 점수)
3.5 이상	-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3.60)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3.53)
3.0 이상	-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3.44) - 다문화가족 영유아(3.42) - 입양된 영유아(3.10)

즉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은 장애 부모 자녀, 질환 있는 부모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복지시설 영유아이며, 입양된 영유아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해서는 낮은 필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질환 있는 부모 자녀와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그리고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는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으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며, 반면에 현행 1순위자인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입양된 영유아는 그 순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상별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의 경우 지역간 인식 차이를 보여, 특히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의 중요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읍·면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도시 지역과는 달리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장애 부모와 질환 있는 부모 자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여 어린이집 입소를 일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V-2-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지역 규모별

단위: 점(명)

문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F
기초생활수급자	4.11	3.98	4.18	1.9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4.38	4.33	4.46	0.64
차상위계층 자녀	3.67	3.64	3.78	0.41
장애 부모 자녀	4.56	4.43	4.58	2.6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4.18	4.19	4.34	0.83
맞벌이 가구 자녀	4.08	3.89	4.16	3.52 [*]
다문화가족 영유아	3.37 ^a	3.46	3.78 ^b	4.50 [*]
3자녀 이상 가구	3.80 ^a	3.74 ^a	4.13 ^b	3.79 [*]
조손가족 영유아	4.03	3.98	4.18	1.05
입양된 영유아	3.10	3.03 ^a	3.43 ^b	3.58 [*]

(표 V-2-3 계속)

문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F
질환 있는 부모 자녀	4.42	4.31	4.48	1.77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3.42 ^a	3.41 ^a	3.78 ^b	3.55*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3.64	3.46	3.82	3.65*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4.08	3.99	4.03	0.80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3.55	3.45	3.70	1.98
계	(655)	(278)	(67)	

주: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대체로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 5점으로 변환하여 5점 척도로 계산한 값임.

* $p < .05$, $a \neq b$

3.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차등 적용 필요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해야 하는 대상과, 맞벌이 가구 입소 순위 세분화의 필요성 및 적용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맞벌이 가구 입소 순위 세분화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시에 대해 근로 형태와 근로 시간, 근로 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 시간이 7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로 일수 69.2%, 근로 형태는 66.9%로 나타나,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V-3-1〉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차등 적용 기준 동의 비율

구분	근로 시간	근로 형태	근로 일수	단위:%(명) 수
전체	73.4	66.9	69.2	(1,000)
대도시	73.0	67.9	70.1	(655)
중소도시	72.3	64.7	66.2	(278)
읍·면 지역	82.1	65.7	73.1	(67)

각 항목별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준을 질문한 결과, 주당 근로 시간의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이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은 4.8%, 주 30시간 미만은 16.2%, 주 40시간 미만 26.2%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주 40시간 미만, 3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단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주 15시간 미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 지역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과 주 40시간 미만의 해당 비율이 각각 21.8%와 18.2%로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해당 적용 시에 지역간 격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V-3-2〉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 차등 적용-주당 근로 시간 기준

구분	단위: %(명)				계(수)
	15시간 미만	30시간 미만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체	4.8	16.2	26.2	52.9	100.0(734)
대도시	3.6	14.9	26.8	54.8	100.0(478)
중소도시	7.0	17.9	26.9	48.3	100.0(201)
읍·면 지역	7.3	21.8	18.2	52.7	100.0(55)

다음으로 주당 근로 일수에 대해서는 주 5일 이하가 8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 2일 이하 2.2%, 주 3일 이하 7.1%, 주 4일 이하 7.8%를 나타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시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주 4일, 주 3일 순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읍·면 지역에서는 주 5일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읍·면 지역에서는 주 4일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률이 약 22%로 나타나므로 근로 일수당 우선순위의 적용 시에도 지역간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3-3〉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 차등 적용-주당 근로 일수 기준

구분	단위: %(명)				계(수)
	2일 이하	3일 이하	4일 이하	5일 이하	
전체	2.2	7.1	7.8	82.9	100.0(692)
대도시	1.7	7.8	7.4	83.0	100.0(459)
중소도시	2.7	4.3	8.7	84.2	100.0(184)
읍·면 지역	4.1	10.2	8.2	77.6	100.0(49)

나. 맞벌이 가구 대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필요도 인식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맞벌이 가구의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 가구에 비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대상으로 장애 부모 자녀 89.7%, 질환 있는 부모 자녀 86.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83.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당 비율이 60%를 넘는 대상으로는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71.0%), 아동복지시설 영유아(67.9%), 기초생활수급자(66.5%)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 자녀보다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는 입양된 영유아(75%),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63.7%), 다문화가족 영유아(6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가구가 각 대상에 대해 자신들보다 우선 입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앞서 살펴본 전체 대상의 동의 비율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각 대상별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각 대상별 동의 비율은 장애 부모 자녀가 8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질환 있는 부모 자녀 79.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75%,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61.4%, 조손가족 영유아 60.9%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조차 장애 부모와 질환 있는 부모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는 자신들에 비해 보육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우선순위를 높게 적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V-3-4〉 맞벌이 가구 대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대상

구분	동의 비율		단위:%(명)	
	동의 비율	전체	맞벌이 가구의 동의 비율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66.5	(1,000)	53.0	(3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83.2	(1,000)	75.0	(368)
차상위계층 자녀	54.4	(1,000)	41.0	(368)
장애 부모 자녀	89.7	(1,000)	84.0	(368)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67.9	(1,000)	56.8	(368)
다문화가족 영유아	34.4	(1,000)	24.5	(368)
3자녀 이상 가구	53.5	(1,000)	46.7	(368)
조손가족 영유아	66.0	(1,000)	60.9	(368)
입양된 영유아	25.0	(1,000)	17.9	(368)
질환 있는 부모 자녀	86.5	(1,000)	79.6	(368)

(표 V-3-4 계속)

구분	동의 비율	전체	맞벌이 가구의 동의 비율	전체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36.3	(1,000)	31.5	(368)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47.5	(1,000)	37.5	(368)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71.0	(1,000)	61.4	(368)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43.3	(1,000)	35.9	(368)

〈표 V-3-5〉 맞벌이 가구 대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 동의/비동의 비율

단위: %

동의 비율	비 동의 비율
- 장애 부모 자녀(89.7) - 질환 있는 부모 자녀(86.5)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83.2) -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71.0)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67.9) - 기초생활수급자(66.5) - 조손가족 영유아(66.0) - 차상위계층 자녀(54.4) - 3자녀 이상 가구(53.5)	- 입양된 영유아(75) -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63.7) - 다문화가족 영유아(65.6)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56.7)

4. 소결

앞서 살펴본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대기 현황과 입소 관련 필요도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므로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이외 대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어린이집 입소순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대기 기간은 대도시 지역이 평균 6.2개월로 현저히 높고, 총 대기 기관 수 역시 평균 4.1개소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므로 대도시 지역의 경우 현행 우선순위 적용 기준을 정교화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대기 중인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낮은 설치율로 인해 이외 기관들에서의 대기 신청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입소

우선순위 적용의 의무화는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구 특성별 대기 현황에 의하면, 장애 부모와 질환 있는 부모 자녀의 대기 비율이 매우 높고, 질환 있는 부모 자녀의 평균 대기 기간은 9.8개월로 가장 높아 이들의 입소 우선순위 조정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와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의 총 대기 기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보육 수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 부모와 질환 있는 부모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필요도가 가장 높아 5점 만점에 각각 4.53점, 4.39점, 4.37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4.19점), 기초생활수급자(4.08점),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4.05점), 맞벌이 가구 자녀(4.03), 조손가족 영유아(4.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으로는 장애 부모와 질환 있는 부모 자녀,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도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현재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 돌봄 중인 부모와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도 비교적 높은 필요도를 보이므로 새롭게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족의 우선 입소 필요도는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지역 규모별로 차별적인 적용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맞벌이 가구 자녀의 입소 순위를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73.4%, 69.2%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주당 3일 이상 근로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또한 맞벌이 가구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장애 부모나 질환 있는 부모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로 조사되었고, 해당 비율이 80%선을 넘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입소는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I.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내실화 방안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가구 특성별 보육 수요를 요약 및 종합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적용의 기본 방향과 현행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요약 및 종합

앞 장에서 다룬 외국 사례, 복지 제공 관련 법률, 육아지원제도, 그리고 본 연구의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대기 현황과 우선 입소 필요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과 프랑스의 보육시설 입소 기준에 의하면, 기관보육 수요가 높다고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 또는 가구와, 가정내 양육 환경이 열악한 아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맞벌이 가구는 물론 직업훈련 또는 학업 중, 그리고 구직 활동 중인 부모들도 보육 수요층으로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노력이 두드러지며, 장애 부모나 실직 및 해고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는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질환이 있는 부모에게 전일제 근로나 장애 부모와 동등한 입소 순위를 부여하며, 가족 간병 중인 부모의 보육 수요도 중요시되는데, 이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아동 특성으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열악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구가 일차적으로 고려된다. 즉 장애나 만성 질환을 지닌 아동과,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부모가 부재하거나 가정폭력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도록 규정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쌍생아를 포함하여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기관보육 지원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이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보육 수요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내 보육 우선 지원 대상과, 본 연구의 의견조사 결과에서 어린이집 총 대기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여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이 크다고 예상되는 대상 그리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우선 입소 필요도 인식 수준이 평균 4.0점(만점 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대상을 종합해보면 <표 VI-1-1>과 같다.

3개 항목에 모두 속한 대상은 맞벌이 가구가 유일하며, 2개 항목에 속한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부모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영유아 2자녀 가구,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개 항목에 속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영유아, 3자녀 이상 가구 영유아,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출산 전후(6개월) 부모, 가족 돌봄 중인 부모의 자녀로 나타난다. 반면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와 입양된 영유아는 해당 항목이 전무하여 앞서 언급된 대상들에 비해 보육 수요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다.

〈표 VI-1-1〉 공통 적용 대상-가정내 보육/대기 기간/입소 필요도

구분	가정내 보육	대기 기간	입소 필요도	종합
기초생활수급자			○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취업)		○	2
차상위계층 자녀		○	○	2
장애 부모 자녀	○		○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	2
맞벌이 가구 자녀	○	○	○	1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		2
조손가족 영유아			○	3
다문화가족 영유아				4
3자녀 이상 가구		○		3
입양된 영유아				4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 자녀		○		3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자녀		○		3
가족 돌봄 중 부모 자녀			○	3
질환 있는 부모 자녀		○	○	2

주: 1) 가정내 보육: 아이돌봄지원사업 대상자와 경기도 가정보육사제도 지원 대상 중 공통 적용 대상임.

2) 대기 기간: 어린이집 대기 신청 중인 응답자 중 대기 기간이 5개월 이상 가구임. 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는 현재 이용 기관 입소하기까지 대기한 총 기간임.

- 3) 입소 필요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매우 중요함'(5점)으로 평정한 결과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인 대상임.
- 4) 종합: 3개 차원 중 3개 모두 해당은 1순위, 2개 해당은 2순위, 1개 해당은 3순위이며, 해당 사항 없는 경우는 4순위임.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기관보육의 일차적인 수요층은 맞벌이 가구로서 이들 중 특히 한부모 또는 저소득층인 경우는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지니므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장애 부모와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도 주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특성으로는 부모가 부재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우선 입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인 전일제 근로자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 직업훈련이나 학업 중인 부모들도 포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 여건상 질환이 있는 부모나 출산 직후 6개월인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 입소 대상으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족 간병 중인 부모의 보육 수요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만하다. 이외에도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여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에 건전한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관보육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단 이때 질환이 있는 부모나 긴급한 위기가 발생한 아동, 그리고 가족 간병 중인 부모의 보육 수요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우선 적용이 가능하도록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다.

2.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위의 종합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적용의 기본 방향과 세부 조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의하면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 그리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제공된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의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기관보육의 목표는 1)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2)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지원이다.

이러한 보육 목표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기본 원칙을 모색하면 다음을 들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은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구와 열악한 양육 환경에 처한 아동이다.

앞서 언급한 기관보육의 목표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적용 기준은 1) 보호자 입장에서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상황인지 2) 아동 입장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이 보장되는지에 근거한다. 또한 이는 보육 욕구 수준에 따라 1) 아동을 돌볼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2) 보호자는 존재하나 장애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3) 보호자가 돌볼 수는 있으나 가정 여건이 열악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이 요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맞벌이 가구 그리고 장애 부모의 보육 수요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이 요구되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순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보장한다.

2. 대상별 보육 욕구 수준에 따라 입소 순위 적용 체계를 다층화한다.

현행 1순위 입소 대상자들의 보육 욕구는 그 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므로, 실제 보육 수요가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입소 순위를 정교화하고, 추가적인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즉 현행 1순위 대상은 9개 항목으로 동일 점수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1순위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이들 대상이 저소득층 가구 등으로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지닌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3. 입소 우선순위의 면밀한 적용을 위해 대상별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입소 우선순위 대상과 추가 고려 대상의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여 필요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대표적으로 전일제 근로자 중심의 맞벌이 가구 기준을 세분화하여 시간제 근로자와 직업훈련 또는 학업 중인 부모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가족 돌봄 중이거나 질환이 있는 부모 등 일시적으로 보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입소 순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별 입소 우선 필요도는 지역적 여건 즉 대기 현황과 지역내 가구 분포 등에 따라 일부 대상의 경우 그 중요도가 달리 나타나므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의 적용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 보육 수요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4개소가 넘는 기관에 약 6.2개월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족의 입소 우선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 시 1순위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필요 시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입소 순위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한다.

나. 세부 조정 방안

1)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단지 1, 2순위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1순위 대상자는 9개 항목으로 많아 전 연령(0~만 5세) 무상보육의 실시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보육 수요가 높은 대상들이 원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제기되는 데, 이는 무엇보다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35.4%¹⁶⁾에 불과한 데서 연유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일차적인 보육 수요충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 신청 비율은 입양된 영유아를 제외하면 우선 입소 (고려) 대상 중 가장 높은 75.3%이고,

16) 해당 수치는 영유아 가구 총 2,528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임(서문희 외, 2012: 67).

해당 기간은 평균 5.6개월에 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견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보다 주목하여 이들의 어린이집 입소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들 중 저소득층 등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지닌 가구에게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조정 1안)과, 맞벌이 가구 및 이들에 준하는 보육 수요층을 엄밀하게 선정하여 현행 1순위 대상자의 규모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조정 2안)을 모색하였다.

가) 조정 1안

조정 1안은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와 더불어 조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모든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대표적인 취약계층 가구 즉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자녀, 영유아 2자녀 가구, 조손가족 영유아 3)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속하는 경우에 각각 A, B, C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기본 1순위 점수에 A등급에 속하는 경우는 100점, B등급 70점 C등급 50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단 이때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만 12세 미만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새롭게 정의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준하는 보육 수요를 지닌 것으로 판정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와 장애 부모는 맞벌이 가구와 더불어 우선 배정한다.

다음으로 2순위 대상은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1순위 조정 기준 대상 즉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영유아 2자녀 가구 영유아, 조손가족 영유아, 3자녀 이상 가구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포함되며, 이들 간의 입소 순위의 구분은 필요에 따라 1순위 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A~C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3순위 대상에는 현행 2순위 대상 중 기타 한부모 가족과 입양된 영유아가 해당된다. 입양된 영유아는 현행 어린이집 입소 2순위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제시한 보육 우선 제공 원칙에 따르면, 가정내 보육이 어렵거나 열악한 양육 환경과는 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보육 수요가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입양된 영유아의 입소 우선 필요도는 입소 우선

(고려) 대상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는 달리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차원에서 입양에 따른 추가 양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육 수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앞서 종합적으로 논의된 바에 의하면, <표 VI-2-1>에 제시된 조정 방안에서 2순위 대상으로는 질환이 있는 부모의 자녀, 3순위 대상으로는 가족 돌봄 중인 부모,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표 VI-2-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세부 조정 방안 - 1안

입소순위	대상자		
1순위 ¹⁾	- 맞벌이 가구 자녀	조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A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조손가족 영유아	B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C
	- 장애 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2순위 ²⁾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조손가족 영유아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3순위 ³⁾	- 기타 한부모가족 자녀 - 입양된 영유아		

주: 1) 1순위 대상인 맞벌이 가구 중 A등급에서 C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함. 이때 가산점은 A~C등급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

* 3자녀 이상 가구는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임.

2) 2순위 대상은 맞벌이를 제외한 가구로서, 필요시 A부터 C등급 순으로 점수를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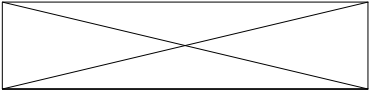
3) 2순위 대상으로는 질환이 있는 부모, 3순위 대상으로는 가족 돌봄 중인 부모,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가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이 같은 조정 1안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일차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구 중 저소득층 등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지닌 대상에 주목하여 가산

점을 부여함으로써 보육 욕구 수준에 따른 보다 면밀한 입소 순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 조정 2안

조정 2안은 현행 1순위 대상자가 9개 항목으로 대상별 보육 수요가 면밀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 등 보육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1순위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앞서 종합적 논의 결과에 의하면, 조정된 1순위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 장애 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현행		조정 방안
1순위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영유아 - 입양된 영유아	⇒	- 조손가족 영유아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3순위		⇒	- 기타 한부모가족 자녀 - 입양된 영유아

주: 1) 2순위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임.

2) 2순위 대상으로는 질환이 있는 부모 3순위 대상으로는 가족 돌봄 중인 부모, 출산 전후(6개월) 부모,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가 새롭게 고려될 수 있음.

[그림 VI-2-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세부 조정 방안 - 2안

다음으로 2순위 대상은 기존 1순위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족 영유아, 3자녀 이상 가구와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가 하향 조정되고, 기존의 2순위 대상인 조손가족 영유아가 포함되며, 질환이 있는 부모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어 가정내에서 양육이 가능하고, 1순위 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비해 양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다자녀 가구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고려된 대상으로, 본 연구의 어린이집 입소 필요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1순위 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입소 우선 필요도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201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장 낮은 입소 필요도를 나타냈다(3.42점, 5점 만점).

마지막으로 3순위 대상은 기존 2순위 대상자인 기타 한부모가족 자녀와 입양된 영유아 포함되며, 이외에도 직업훈련 또는 학업 중인 부모, 출산 전후 6개월 부모가 새롭게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조정 2안에 따라 현행 1순위 대상 중 차상위계층 등을 2순위로 하향 조정할 경우 현행 1순위 대상 규모의 의미 있는 축소가 예상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응답 가구 비율에 의하면, 현행 1순위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자녀 5.6%, 다문화가족 영유아 5.0%, 3자녀 이상 가구 영유아 11.5%,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영유아가 35.0%로서 이들이 2순위 대상자로 하향 조정될 경우 1순위 대상자는 현행 기준에 대비 최대 57.1%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보육 수요층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타 조정 방안

앞서 제시한 적용 기준에 명시된 대상은 아니나, 보육 수요가 명확하여 향후 그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우선 입소 대상으로 새롭게 포괄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현행 전일제 근로 기준 이외에 다양한 근로 형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적용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질환이 있는 부모 등은 높은 보육 수요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새로운 적용 기준이 요구된다.

가) 맞벌이 가구의 확대 적용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적용 맞벌이 가구 즉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 대상은 하루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 한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근로 특성에 의하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약 8~23%선이고, 주당 5일 미만 근로자가 약 6% 수준이며, 본 연구의 조사에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 특성별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70% 수준에 육박하므로 이들의 보육 수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우선순위 적용을 주당 근로 시간의 경우는 최소 15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전일제 근로 부모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나) 질환이 있는 부모 등 확대 적용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질환이 있는 부모의 어린이집 대기 비율이 매우 높고, 대기 기간은 약 9.8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장애 부모와 더불어 가장 높은 입소 우선 필요도를 지닌 대상으로 평가되고, 맞벌이 가구에 비해 우선 입소가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 장애 부모와 함께 80%를 넘는 동의 비율을 보였다. 일본 사례에서도 질병 및 부상을 당한 부모들이 장애 부모와 동등한 보육 수요층으로 가장 높은 입소 순위자로 명시된다.

또한 가족 돌봄 중인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모든 사례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친족 간병 중인 보호자는 가장 높은 입소 순위로 규정된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필요도 조사에서도 가족 돌봄 중인 부모는 평균 4.08점(5점 만점)으로 현행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구에 비해 가족에 의한 돌봄 문화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육 수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출산 전후 6개월 부모는 부모 여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추가 고려 대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질환이 있는 부모는 최소 입원 기간 등을 명시하고(2개월 등), 가족 돌봄 중인 부모의 경우는 해당 가족의 시설 통원 시 동반이나 입원 등에 따른 간병으로 월 20일 이상, 1주일에 20시간 보육이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기타 조정 기준

앞서 제시한 적용 기준들 이외에도 보육 수요의 면밀한 적용을 위해 기타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본 점수에 가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일본 사례와 선행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면, 추가 점수가 요구되는 기타 조정 기준 항목으로는 1)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려는 부모 2) 형제·자매가 함께 다니는 경우 3) 가정 내에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경우 4)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의 해당 주민 자녀 5) 부모 한 쪽이 혼자 부임한 경우 6) 자녀를 비동거중인 친인척에 맡기고 있는 경우 7)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이다.

반면 감점 적용이 요구되는 기타 조정 기준 항목으로는 1) 신청 아동 이외의 자녀로 인해 출산휴가 중으로 출산휴가 종료 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 2) 동거 중인 조부모가 무직자로서 신청 아동의 보육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 3)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근무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표 VI-2-2〉 어린이집 입소 순위 기타 조정 기준

기타 조정 기준	가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혼자 부임한 세대	+
육아휴직 종료로 재입소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아동(전학 신청자를 포함) 이외의 형제·자매(졸업예정 아동 제외)가 재원 중이거나 또는 동시에 신청한 경우	+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의 해당 주민 자녀	+
신청 아동이 장애 치료로 인해 보호자의 근로가 제한되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
신청 아동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인척에게 상시로 맡기는 경우	+
신청 아동 이외의 아동으로 인해 출산휴가 중으로서, 출산휴가 종료 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경우	-
동거 중인 조부모가(60세 미만) 무직자로서 신청 아동의 보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
해당 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전입 예정자 제외)으로서 근무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	-

3) 지역 여건별 적용 방안

도시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대기 현황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앞서 제시한 우선순위 조정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용이 요구된다.

우선 대도시 지역의 경우는 대기 아동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므로 1순위 대상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선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1순위자의 대기자가 과다한 경우 1순위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한다. 즉 앞서 조정된 1순위자 중

상대적으로 보육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맞벌이 가구와 장애 부모의 자녀,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 외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은 그 다음 순위를 적용하여 차등화한다(그림 VI-2-2 참조). 앞서 다른 종합적 논의들에 의하면, 조정 2안의 1순위 대상자 중 저소득층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는 현행 1순위 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 수요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을 하향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조정 방안		대도시 지역	
1순위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A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B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그림 VI-2-2]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대도시 지역

그 밖에도 도시 지역은 읍·면 지역에 비해 앞서 추가 우선 입소 대상으로 제시한 직업훈련/학업 중 부모와 출산 전후 6개월 부모 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에 대한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맞벌이 가구 적용 기준의 세분화의 필요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조정 방안		읍·면 지역
1순위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 맞벌이 가구 자녀 - 장애 부모 자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녀 -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

[그림 VI-2-3]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 방안-읍·면 지역

읍·면 지역의 경우는 도시 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의 해당 비율이 높고,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 영유아의 우선 입소 필요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이들의 입소 순위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조정 2안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2순위 대상자이나, 지역적 필요에 따라 현행과 같이 1순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VI-2-3 참조).

참 고 문 헌

경기도(2012).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2012). 2012년판 고용노동백서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3b). 장애인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3c). 아동분야사업안내.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유해미·김혜진(2012).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가구여건별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13a).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3b).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2013). 가정내 양육지원의 영향과 나아갈 방향. 2013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 웹사이트>

일본 美浜町 웹사이트(town.mihama.aichi.jp). 검색일(2013년 5월)
일본 福岡市 웹사이트(www.city.fukuoka.lg.jp). 검색일(2013년 5월)
일본 仙台市 웹사이트(www.city.sendai.jp). 검색일(2013년 5월)
일본 世田谷區 웹사이트(www.city.setagaya.lg.jp). 검색일(2013년 5월)
일본 品川區 웹사이트(www.city.shinagawa.tokyo.jp). 검색일(2013년 5월)
일본 横浜市 웹사이트(www.city.yokohama.lg.jp). 검색일(2013년 5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검색일(2013년 5월)

부 록

-
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의견조사 설문지(부모용)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의견조사 - 부모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조사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유해미 부연구위원(02-398-7708, nowyoo@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 먼저, 응답자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거주 지역	① 서울 구로구 ② 경기도 구리시 ③ 경기도 가평군
문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문3) 연령	() 세
문4) 가구소득	월 ()만원
문5) 다음 불러드리는 자녀 또는 가구 특성에 해당하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해당 사항 모두 표기)	
	①해당됨 ②해당 안됨
5-1) 기초생활수급자	① ②
5-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① ②
5-3)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하)	① ②
5-4) 장애 부모 자녀	① ②
5-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① ②
5-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① 문5-6A)로 ②
문5-6)의 ①만 응답	5-6A)주당 평균 근로 시간 5-6B)주당 평균 근로 일수 5-6C)근로 형태
부	() 시간 () 일 ①출퇴근 근무 ②재택 근무
모	() 시간 () 일 ①출퇴근 근무 ②재택 근무
5-7) 다문화가족 영유아	① ②
5-8) 3자녀 이상 가구	① ②
5-9) 조손가족 영유아	① ②
5-10) 입양된 영유아	① ②
5-11) 질환 있는(장기간 입원, 통원 치료 중) 부모 자녀	① ②
5-12) 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 중인 부모 자녀	① ②
5-13) 임신/출산한 부모의 자녀(출산전후 6개월)	① ②
5-14) 가족 돌봄 중(장애 가족, 치매 노인 돌봄 등) 부모 자녀	① ②
5-15)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① ②
문6) 총 자녀 수	() 명

문10) ○○님께서서는 맞벌이 부부의 1) 근로 시간과 2) 근로 형태 3) 근로 일수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에 우선순위를 차등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동의함	②동의하지 않음
10-1) 근로 시간(전일제 근로/시간제 근로 등)	☒ 문10A)로	
10-2) 근로 형태(출퇴근 근무/재택근무 등)		
10-3) 근로 일수(주 5일 이상 근무/주 3일 이내 근무 등)	☒ 문10B)로	

문10A) **(근로 시간별 차등 입소순위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 ○○님께서서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필요한 부모의 주당 근로 시간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15시간 미만 ② 주 30시간 미만 ③ 주 40시간 미만

문10B) **(근로 일수별 차등 입소순위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 ○○님께서서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필요한 부모의 주당 근로 일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 2일 이하 ② 주 3일 이하 ③ 주 4일 이하 ④ 주 5일 이하

문11) ○○님께서서는 아동 연령별, 즉 영아(만0~2세)와 유아(만 3~5세) 간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11A)로 ② 아니오

문11A)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님께서서는 다음 각 블러드리는 대상별로 입소대상이 유아에 비해 영아인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자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1점, 매우 중요하다면 5 등 중요도를 1에서 5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구분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11-1) 기초생활수급자					
1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1-3)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하)					
11-4) 장애 부모 자녀					
11-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11-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11-7) 다문화가족 영유아					
11-8) 3자녀 이상 가구					
11-9) 조손가족 영유아					
11-10) 입양된 영유아					
11-11) 질환 있는(장기간 입원, 통원 치료 중) 부모 자녀					
11-12) 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 중인 부모 자녀					
11-13) 임신/출산한 부모의 자녀(출산전후 6개월)					
11-14) 가족 돌봄 중(장애 가족, 치매 노인 돌봄 등) 부모 자녀					
11-15)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문12) ○○님께서서는 다음 블러드리는 대상은 맞벌이 부부보다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1) 기초생활수급자		
12-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2-3) 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 120% 이하)		
12-4) 장애 부모 자녀		
12-5) 이동복지시설에 영유아		
12-6) 다문화가족 영유아		
12-7) 3자녀 이상 가구		
12-8) 조손가족 영유아		
12-9) 입양된 영유아		
12-10) 질환 있는(장기간 입원, 통원 치료 중) 부모 자녀		
12-11) 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 중인 부모 자녀		
12-12) 임신/출산한 부모의 자녀(출산전후 6개월)		
12-13) 가족 돌봄 중(장애 가족, 치매 노인 돌봄 등) 부모 자녀		
12-14)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12-15) 위에서 블러드린 대상 이외에 더 추가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 _____)		

연구보고 2013-01

어린이집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7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82-4 93330